국립외교원 13기 글로벌리더십과정 정책보고서

유럽GDPR시행에 따른 바람직한 개인정보보호 방안 연구

- '잊혀질 권리'의 역외적용 대비 중심으로 -

2020. 10.

소속 : 경 찰 청

교번 : 5 - 9

성명 : **최 주 원**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방향과 범위 ····· 4

가. GDPR의 우리나라 역외적용 가능성 대비 연구

나. 잊혀질 권리 도입에 따른 인간 존엄성 실현방안 연구

Ⅱ. 유럽 GDPR상 잊혀질 권리 시행 등 국제동향 ····· 6

1. 유럽GDPR의 주요 내용 ····· 6

가. 입법의 배경과 경과

나. GDPR 의 주요내용

다. GDPR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

2. 잊혀질 권리 ····· 13

가. 잊혀질 권리 의의 및 특징

나. 법적 성격

3. 잊혀질 권리에 대한 각국의 현황 ····· 17

가. 국가별 논의 현황

나. GDPR상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주요 내용

Ⅲ. 역외적용 사례 및 대응방안 검토 ····· 26

1. 역외적용의 의의 ····· 26

2. 각 국의 역외적용 사례 ····· 26

가. 미국의 자국법 위반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사례

나. 유럽의 자국법 위반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사례

3. 개인정보의 역외이전 ····· 31

가. 개인정보 역외이전의 필요성

나. GDPR의 역외이전 규정

1) “적정성 결정에 따른 이전 (Transfers on the basis of an adequacy decision)”

2) “적절한 보호조치에 의한 이전 (Transfers subject to appropriate safeguards)”

3) “특정상황에 대한 예외 (Transfers subject to appropriate safeguards)”

다. 잊혀질 권리와 역외이전

4. 역외적용 가능성과 대응방향 검토 ····· 37

Ⅳ. 국내 제도 및 대응현황 ····· 38

1. 국내 제도 고찰 ····· 38

가. GDPR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정비

나.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과 잊혀질 권리

1)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2) 잊혀질 권리의 구현

3)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2. 대응 현황 ····· 42

가. 국회의 대응 현황

나. 정부의 대응 현황

1)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 잊혀질 권리 관련,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다. 기업의 대응 현황

1)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 등 요구

2) 개인정보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결합

3.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민인식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 55

Ⅴ. 정책제언 ····· 59
1.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제고 ····· 59
2.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는 환경 조성 ····· 60
3. 관련 제도 정비 및 감독기구 운영 ····· 60
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 ····· 62
5.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 ····· 63
6. 인간존엄 구현 개인정보 보호 표준 개발 ····· 65
7. 성과중심주의적 현장 증거수집 행태의 개선 검토 ····· 66
Ⅵ. 맺음말 ····· 67
〈 참 고 문 헌 〉 ····· 69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빅데이터 분석〉 ····· 73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바야흐로 이론의 개발 못지않게 그 이론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실행의 시대’를 맞았다. 이러한 시대에는 이론과 현실을 넘나드는 소통이 중요한 시대로 전문지식을 뒷받침하는 매개체이자 최소단위인 데이터의 가치가 중요하다. 즉 데이터의 정확성과 데이터의 출처(정보주체)가 중요하며, 지식간 통합이 보편화되므로 그 지식을 이루는 원자(原子)인 데이터의 표준형태 역시 중요하다.

아울러 데이터의 정확성은 불법정보를 여과해내는 작업에서 담보된다. 과거에는 불법정보란 음란물, 명예훼손물, 침략전쟁 선동물 등과 같이 법익을 침해하여 불법이 포함된 정보를 일컬었다. 이러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국가가 방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불법정보의 유통을 막는 방법은 두가지 형태로 가능한데 첫째는 감시망을 촘촘히 하여 불법정보의 유통현장에서 발견 즉시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적극적인 방식이 있고, 둘째는 사후에 그러한 정보를 유통시킨 사람을 처벌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인터넷과 모바일이 일상화된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형태의 불법정보가 나타났다. 이 ‘잊혀질 권리’는 인간과 컴퓨터간에 사물을 기억하고 인출하는 과정의 차이에서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일부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은 현실의 컨텐츠 자체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화(context)하여 제목 위주로 입력을 하였다가 기억을 회상할 때에는 제목(title)을 가지고 회상(retrieve)하여 새로운 스토리를 만드는 메커니즘을 구성한다. 반면, 컴퓨터는 모든 컨텐츠를 글자 그대로 축차적(verbatim)으로 모두 기억하였다가 인출하는 메커니즘을 특징으로 한다고 한다.[1)]

1) 김대식, “신경과학의 이해, - 뇌, 현실, 기계, 지능 -”, 열린연단 : 문화의 안과 밖, 네이버, 2014년. (http://tvcast.naver.com/v/172276)

이러한 ‘잊혀질 권리’에 대한 관심은 정보를 둘러싼 패러다임의 대변환을 의미한다. 유사 이래로 인류에게 망각이 일반적이었고, 기억이 예외이었는데 디지털 기술과 전 지구적 네트워크로 이러한 균형이 역전되어 오늘날 널리 확산된 기술의 도움으로 망각이 예외가 되어가고 있으며 기억이 일반적이 되어 가고 있다.[2] 이로 인해 과거에 자신이 올린 인터넷상 기록이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부메랑이 되어 본인에게 피해나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 경우 정보가 사실이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서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경우에 검색되지 않게 하도록 링크를 단절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본질과 디지털의 본질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슬기롭게 제거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즉 개인정보 관리자에게 적절한 의무를 부과하여 알권리의 주체 중 하나인 언론을 압박하지 않으면서도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절묘한 조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잊혀질 권리’는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에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형태로 도입이 되어서,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가 구글에 대해 ‘링크를 삭제하라’고 판결한 사건의 근거가 되었다. 이어서 2016년 법규적 효력을 가진 일반정보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으로 제정되어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EU는 GDPR 제17조에서 정보주체에게 삭제권(right to be erasure)을 부여하여 정보주체의 ‘잊혀질 권리’를 강화하였다. 제3조에서는 관할과 관련하여 영토적 범위를 EU 안에 설립된 관리자나 처리자가 아니더라도 EU 내에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경우와 EU 안에 거주하는 정보주체의 행동을 감시할 경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3조와 제79조에서는 기록보존의무와 같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도 전 세계 매출액의 2% 또는 1천만 유로 중 높은 금액을 상한으로 하고,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와 같은 중한 위

2) 빅토마이어 쇤베르그(구본권 옮김), “잊혀질 권리: 디지털 시대의 원형감옥 당신은 자유로운가?”, 지식의 날개, 2011년

반에 대해서는 전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 중 높은 금액을 상한으로 결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EU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GDPR의 EU지역 내 적용뿐 아니라 역외적용 위험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 크고, 미중갈등이 고조되는 시기에 그 위험성을 헤칭(hedging)하려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유럽에서 시행되는 GDPR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코로나 19 등 팬데믹 시대에 비대면 접촉이 보편화되고, 그 대안으로 물리적 비접촉에 기반한 정보유통 시대를 맞아 그 유통 대상이자 원재료인 개인정보와 컨텐츠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 기업, 국가 등 경제주체 사이에 상호유통하는 표준이 대단히 중요하다.

유럽은 GDPR을 시행하면서 국제적으로 데이터를 유통하는 국제표준을 선제적으로 만들고 시행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려 하고 있다. 특히 유럽시장이 전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높은 비중을 감안하면 대외수출 및 IT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이 표준이 역외 적용됨에 따른 파장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이에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과거 미국 등 영향력이 큰 국가들이 독점금지법, 증권법, 지적재산권법, 애국법, 국가수권법 등을 통해서 국가안보 등을 명분으로 자국의 법을 외국기업에 적용함으로써 국제규범 보다 우선하는 사례를 고려해보건대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한 EU의 잊혀질 권리와 유사한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비방목적 명예훼손죄, 민법 손해배상제도(제750조, 제751조, 제764조) 등 권리구제제도, 정보통신망법 제30조 동의철회권 및 정정권, 제44조의 2, 제44조의 3 임시조치제,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삭제요청권” 등을 통해 구현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 개인정보의 관리는 그 활용과 보호로 구분할 수 있으며, 활용은 빅데이터, AI(Artificial Intellectual; 인공지능) 등으로 현출되며, 보호는 ‘잊혀질 권리’ 등으로 현출되는 바, 양자간에 적절한 조화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이 경우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알 권리)간에 개개의 사안별로 적절한 비교형량을 거쳐야 한다. 더 나아가 지금은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과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한 ‘불법정보’를 구분하여 개념 정의하고 차단 또는 제제를 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앞으로 유럽에서 ‘잊혀질 권리’와 같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정보, 동의한 정보, 진실인 정보 등에도 적용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고민과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2. 연구의 방향과 범위

가. GDPR의 우리나라 역외적용 가능성 대비 연구

우선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그 위험성을 헤칭하기 위해서 무역을 다변화하려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유럽진출의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GDPR에 대한 그간 도입과정, 각국의 입장을 살펴 보겠다. 이어서 각국 국내법의 역외적용사례 분석을 통해 역외 적용 시 대응 방향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가 대응하고 있는 입법방향, 정책집행 등 상황이 적절히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대안을 검토해보겠다.

특히 GDPR 중에서도 ‘잊혀질 권리’는 우리에게 생소하고 국제적으로도 국가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나 정도가 달라 자칫 현장에서 혼선이 있을 우려가 있다. ‘개인정보’, ‘개인정보유출’, ‘잊혀질 권리’ 등 주요개념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와 관련된 그 구체적인 인식정도를 확인하고, 제도의 정착을 위한 우리나라 정책 당국의 노력을 점검하여 정책적 대안을 검토해볼 예정이다.

나. 잊혀질 권리 도입에 따른 인간 존엄성 실현방안 연구

우리나라는 현재의 정보, 정보주체가 동의한 정보, 위법한 정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알 권리 등 상충되는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인간 존엄성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우선할 경우 '블라인드' 등 각종 조치를 취해 왔다.

향후 GDPR의 잊혀질 권리와 같이 일정한 기간이 지난 정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동의가 철회된 정보, 위법하지 않으나 사실인 정보도 기존에 이룬 법익 형량 관점에서 공익(표현의 자유, 알 권리)보다 사익(인간존엄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관련 법안과 정책구현 현황을 살펴보겠다. 단순히 유럽 등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IT기술 등이 앞선 우리나라가 세계의 표준을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본다.

또한,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입장에서 단순히 형사법적·행정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압수수색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헌법적인 시각에서 개인정보 관리의 표준을 같이 살펴봄으로써 행정편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이 구현된 보다 적극적인 공동체 구성원을 전제로, 그 구성원과 통합된 공동체 모습을 구현하는 방법을 세계를 선도할 개인정보 관리 표준 대안으로 제시해 본다.

Ⅱ. 유럽 GDPR상 잊혀질 권리 시행 등 국제동향

1. 유럽GDPR의 주요 내용

가. 입법의 배경과 경과

1980년 OECD는 “프라이버시보호와 개인정보의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을 통해 개인정보 8원칙을 권고하였다.[3)]

그러나 개별국가들은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라는 상호 충돌하는 가치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보다는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창출이라는 측면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인터넷의 확산·스마트 폰의 대중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와 맞물려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전파 속도와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이러한 정보에 의해 역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각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 법령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EU의 경우 1995년 “개인정보 처리와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개인정보호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 이하 지침)”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 지침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접근권(지침 제12조)을 보장하는데 그치고, 강제규정이 아닌 ‘지침’이라는 규범상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EU는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제도 마련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칙’(regulation)을 제정하였고, 이 규칙이 GDPR(일반정보보호규칙; General Data Protection Reugulation)이다.

---

3) 개인정보보호 8원칙: “수집제한의 원칙(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정보정확성의 원칙(Data Quality Principle), 목적명확화의 원칙(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이용제한의 원칙(Use Limitation Principle), 안전 확보의 원칙(Security Safeguards Principle), 공개의 원칙(Openness Principle), 개인참가의 원칙(Individual Participation Principle), 책임의 원칙(Accountability Principle)”, 자세한 내용은 윤종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관”, 정보법학, 제13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 2011년, 192-193면

<표 1> EU GDPR의 성립연표

년도	주요내용
1980년	OECD -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개인정보 8원칙 권고
1980년	유럽협의회(Council of Europe) -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와 관련된 개인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1995.10.24	EU -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처리와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
2012. 1.25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정보개혁 패키지 법안(GDPR 초안) 제안
2012. 5.23	유럽경제사회위원회, 법안에 대한 의견 공표
2014. 3.12	유럽의회, 정보개혁 패키지 법안에 대한 제1독회의 개정안을 입법적으로 결의
2015. 6.15	유럽이사회, 일반적 접근(General Approach)에 합의
2016. 4.14	유럽의회, 정보개혁 패키지 법안을 의결
2016. 5. 4	정보패키지 입법이 EU공보(OJ L 119, pp 1-88)에 공포됨
2016. 5.24	일반정보보호규칙(GDPR, Regulation (EU) 2016/679), 시행
2018. 5.24	일반정보보호규칙(GDPR, Regulation(EU) 2016/679) 적용 개시

2012년 1월 25일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규칙안'은 종래의 '개인정보보호지침(EU Directive, 95/46/EC)'을 대체하는 것으로 개인의 '정보접근 권한'과 정보이전에 관한 '통제 권한'을 대폭 확대·강화했다. 특히 본 규칙안은 EU 내에서 개인정보보호가 기본적 권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규칙안'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내 4년 간의 검토를 거쳐 2016년 4월 14일 유럽의회가 각각 최종법안을 채택하여 5월 4일 공포되었으며 2018년 5월 25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나. GDPR의 주요 내용

GDPR은 총 11장 173개 전문, 99개 본문으로 그 구성에 있어서 1995년 지침에 비해 조문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4].

<표 2> GDPR의 개관 [5]

목차	주 요 내 용
제1장	일반 규정(제1조~제4조)
제2장	원칙(제5조~제11조)
제3장	정보 주체의 권리(제12조~제23조)
제4장	관리자와 처리자(제24조~제43조)
제5장	개인정보의 제3국이나 국제조직으로의 이전(제44조~제50조)
제6장	독립적 감독기관(제51조~제59조)
제7장	협력과 일관성(제60조~제76조)
제8장	권리구제, 책임 및 벌칙(제77조~제84조)
제9장	특별한 정보처리 상황과 관련되는 조항(제85조~제91조)
제10장	위임법령과 집행법령(제92조~제93조)
제11장	최종규정(제94조~제99조)

GDPR의 가장 큰 특징은 법형식상 '규칙'으로 기존 '지침'에 비해 EU 역내에서의 법적 효력이 보다 통일적이고 강력하다는 점이다. 즉, EU 내에서 회원국들의 법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지침'은 그 입법목적과 관련하여 각국을 구속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제도에 규정될지는 각국에 위임되어 있어 법적 효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침'의 형식이 아닌 '규칙'으로 법형식을 상향

4) DPD(정보보호지침)와 GDPR(일반정보보호규칙) 비교

Data Protection Directive(DPD 98/46 EC)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1995년 10월 24일 채택 및 시행 ‣ 총7장, 72개 전문, 34개 본문으로 구성 ‣ 지침을 반영한 회원국 별도 입법 필요 ‣ 각 회원국 법령간 규제 수준 차이 발생	‣ 2016년 5월 27일 채택, 2018년 5월 25일 시행 ‣ 총 11장, 173개 전문, 99개 본문으로 구성 ‣ 모든 EU 회원국에게 직접적으로 적용 ‣ 회원국 간 통일된 법적용 및 규제 가능

5) KISA GDPR 대응지원 센터, GDPR조문, https://gdpr.kisa.or.kr/gdpr/static/gdprProvision.do

하였고, 이 규칙은 EU 전체에 대해서 직접 적용 가능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GDPR의 목적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자연인의 보호와 관련되는 규칙과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과 관련되는 규칙”(제1조 제1항)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자연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 특히 개인정보권을 보호”(제1조 제2항)하는 것과 “유럽연합 내에서의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제1조 제3항)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개인정보의 보호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개인정보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양면적 성격을 모두 규칙의 목적에 명시하였다.

둘째, 판례와 법률 등은 ‘개인정보’ 개념을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라고 규정하여 명확히 하였다.(제4조 제1항).

‘살아있는 자연인’의 개인정보에 한하며, 국적이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적용 된다. 다만 사자(死者)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EU 회원국이 별도 조항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2조 제2항에 따라 순수한 개인적 활동과 가정 활동을 하는 중에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처리,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위협을 예방하는 등 범죄예방·조사·적발·기소와 형벌의 집행 목적으로 관계 당국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처리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물적인 측면에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자동화된 수단에 의해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에 적용되고(제2조 제1항), 지리적으로 개인정보관리자(controller) 또는 처리자(processor)가 EU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의 활동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규칙이 적용된다.(전문 제22항)

넷째, 개인정보 처리의 일반적인 원칙을 적시하였다. 즉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투명하며, 공정히 처리되어야 하고(적법성, 투명성, 공정성), 구체적

이고 목적과 비교하여 적법하며 명시적으로 수집되어야 하며(목적 제한), 처리되는 목적에 비추어 적절하고 필요한 정도로 제한되어야 하고(최소화), 정확해야 하며(정확성), 개인정보의 적절한 보안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고(무결성과 기밀성) 개인정보의 처리는 관리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책임성).(제5조)

다섯째,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기존 지침보다 강화된 동의가 필요하다. 정보주체의 동의는 진정한 것이어야 하며 '표시가 모호하지 않고, 명확하고 적극적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점을 추가하였다.

특히 민감정보 처리(제9조)를 "국경이외로 이전할 경우 특정 상황에 대한 예외 조항(제49조)",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제22조)" 등의 경우에는 명시적 동의가 필요함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아동의 경우 개인정보의 위험성과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전문 제38항)하기에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하고 있다.{제6조 제1항(f), 제57조 제1항 (b), 제40조 제2항 (g)}

여섯째, 인종·민족, 정치적 의견, 종교적·철학적 신념, 노동조합 가입 여부 관련 개인정보의 처리와 유전자 정보,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 건강정보, 성생활·성적 취향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로서 처리가 금지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가 일반에게 공개한 것이 명백한 정보,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적절한 보호조치가 있는 경우 등 10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범죄경력 및 범죄행위와 관련된 정보는 민감정보와 달리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도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① 공적인 권한의 통제에 있을 경우, ② EU 또는 회원국의 법이 허가하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규정하는 경우"에 한해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된다.

일곱째, 정보주체의 권리와 관련하여 삭제권(잊힐 권리), 처리제한권, 개인정보 이동권을 새로 도입하고 열람권·삭제권 등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여덟 번째,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항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자(controller)는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원칙을 준수하고 있음을 책임지고 입증' 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정보 처리 활동을 기록해야 하며(제30조), 개인정보영향평가(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이하 'DPIA' / 제35조) 및 설계단계부터 기술적으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구조를 만들고(제25조), 개인정보준법감시인(Data Protection Compliance Officers, 이하 'DPO')을 지정(제37조)하는 등 책임성 보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아홉 번째, 개인정보 역외이전과 관련하여 제3국이나 국제기구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GDPR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해야 하고, 이는 이전된 정보가 다시 제3국이나 국제기구로 재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열 번째, 개인정보관리자(controller) 및 처리자(processor)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훼손되는 등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권한 있는 당국 및 정보주체에게 24시간 이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제31조 및 제32조)

더불어 정보주체가 잊혀질 권리를 행사하여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서비스 업체는 이를 완전히 삭제하여야 하며, 내부용 파일로도 저장하지 않을 의무와 더불어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이동을 요구하는 경우 데이터 이전을 허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해당기업이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1천만 ~ 2천만 유로 또는 연간 매출액의 2% ~ 4%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79조 제6항).

그 밖에 규정 중 공공기관 및 25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에 개인정보 준법감시인(Data Protection Compliance Officers, 이하 'DPO')[6]을 반드시

6) DPO(개인정보 준법감시인; Data Protection Compliance Officers)의 업무 : 개인정보보호 법규 인식제고

두도록 한 점(제35조 ~ 제37조),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이하 'DPIA')의 도입(제33조 ~ 제34조), 개인정보감독기구(supervisory authority)에 규칙위반 사실에 대한 이의제기 및 개인정보 감독기구 또는 관리자에 대해 사법적 구제절차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이 주목할 만하다.

<표 3>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관련 내용 및 주요 조문[7)]

연번	정보주체의 권리	관련 조문
1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제12~14조
2	"정보주체가 열람할 권리"	제12, 15조
3	"수정권"	제12, 16, 19조
4	"삭제권"	제13, 17, 19조
5	"처리 제한권"	제12, 18, 19조
6	"개인정보 이동권"	제12, 20조
7	"반대권"	제12, 21조
8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22조

다. GDPR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

EU의 GDPR 시행 전과 비교 했을 때 시행 후에는 크게 네 가지 부분에서 변화가 있다.

첫째, 정보주체의 권리 부분이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본 원칙을 확립하고, 기존 지침과 달리 정보주체에게 삭제권, 처리 제한권, 개인정보 이동권,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부분 등 새로운 권리가 추가되어 정보주체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둘째, 기업 등의 책임 강화이다. 기존에는 기업 등의 책임이 개인정보에 대한 최소처리, 처리목적 통지 등으로 한정되었으나,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DPO 지정, DPIA,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이 추가되는 등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여 정보주체 보호를 강화하였다.

및 자문, 내부 정보보호 활동 관리, GDPR모니터링, 정보제공, 조언, 권고사항 제시, 영향평가에 대한 자문 및 평가 이행 감시

7)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우리기업을 위한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북" 개정판, 2017년, 80면

셋째, 개인정보 역외이전의 매커니즘을 확립하였다. EU는 원칙적으로 EU내 수집된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을 금지하지만, 적정성 결정, 적절한 보호조치의 제공,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보장, 효과적인 법적 구제수단의 존재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또는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나 공익상의 중요한 이유 등과 같은 요건을 두어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와 함께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역외이전 체계를 마련하였다.

넷째, 과징금 부과 부분이다. 기존에는 회원국별로 자국 내에서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부과하였는데,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모든 회원국이 통일된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어 강제성이 커졌다.

2. 잊혀질 권리

가. 잊혀질 권리 의의 및 특징

잊혀질 권리는 영어권의 ‘the right to be forgotten’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쓰이게 되었는데, 우리 문법상으로는 피동사인 ‘잊히다’를 이용한 ‘잊힐 권리’가 정확하다. 하지만 그동안 ‘잊혀질 권리’가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라고 사용하고 있다.

잊혀질 권리는 소위 “망각의 권리(the right to oblivion)”, “삭제할 권리(the right to delete)”등으로도 불리우는데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는 ‘잊혀질 권리’를 “관련 데이터가 더 이상 합법적으로 필요치 않을 때 데이터를 ‘더 이상 처리하지 않고 삭제’하는 개인의 권리(the right of individuals to have their data no longer processed and deleted when they are no longer needed for legitimate purposes)” 라고 정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념을 살펴보면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각종 자료의 삭제를 요구하는 권리’로 정의하는 입장이 있고, 삭제 뿐만 아니라

‘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각종 조치함과 동시에 사정을 변경할 때 그 변경 내용을 정보화(게시 및 유통 등)함으로써 이미 알려진 사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권리’ 라는 입장이 있다[8].

현대와 같은 정보의 바다에서 단순 삭제보다는 정보 이전 등을 포함한 각종 조치, 정확한 정보로의 재정보화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후자의 입장이 타당해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잊혀질 권리는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에 대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잊혀질 권리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는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의 비약적 발전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잘못된 정보나, 삭제를 원하는 정보가 정보주체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재생산되어 그 상태로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정보들이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기억된다[9]는 점이다.

잊혀질 권리의 특징은 첫째, ‘원칙적으로 생존하는 자연인’ 의 권리이다. 잊혀질 권리는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개인의 자유를 위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법인은 제외해야 한다. 또한 소위 디지털 유산의 문제로 불리우는 사망한 자의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는 사자(死者)에 대한 정보가 ‘생존하는’ 자연인(직계가족이나 후손 등)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권리로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온라인 상 개인정보’ 를 그 대상으로 한다. ‘온라인’ 상의 정보이므로 디지털 형식을 가지며, 개인정보는 식별정보 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 가능한 정보도 포함된다.

잊혀질 권리가 기본권으로서 보호될 수 있는 있는지, 외국의 동향과 관련 제도를 비교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 잊혀질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

8) 조소영, “잊혀질 권리 : 정보의 웰다잉을 위한 법리 검토”, 한국공법학회 제41집 제2호, 2012년, 435면.
9) 1998년 J. D. Lasica는 온라인 잡지 Salon에 “ 인터넷은 결고 망각하지 않는다(The Net Never Forgets)”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과거는 우리 디지털 피부에 문신처럼 아로새겨지고 있다”고 주장, 박철우, “인터넷상 지속적으로 검색되는 문제의 헌법적 해결: 잊혀질 권리의 도출과 내용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년, 13면.

나. 법적 성격

'잊혀질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새로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존 기본권에 포함하여 이해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기존의 프라이버시권 만으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에 부족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 즉 개인정보를 간접적으로 수집하거나 정보주체가 불가피하게 동의한 경우 등을 고려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권리로서 열거되지 않은 또 하나의 헌법상 권리"로 인식되고 구체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10)]

구체적으로 잊혀질 권리는 1차적 자료의 생산과 창출이 정보주체에게 어떠한 침해를 주는지와 무관하게 인터넷에서 지속적으로 검색된다는 점에서 법익침해의 대상에 차이가 있고[1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주로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가능해짐에 따른 문제이지만 잊혀질 권리는 국가가 아닌 사인, 특히 인터넷·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의 주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12)]

후자의 경우는 다시 그 법적 근거에 대해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견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견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라는 견해 등이 있다.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견해는 잊혀질 권리를 개인정보 보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 견해이다.[13)]

---

10) 조소영, 전게논문, 447면
11) 박철우, 전게논문, 43-44면.
12) 전은정.염흥열, "잊혀질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EU법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논총. 제22권 제3호, 2012년. 253면
13) 이기헌·서의진, "개인정보 수집 제공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조사결과", 한국소비자보호원, 2011년, 6면

한편 판례 등 실무상으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근거라는 견해는, 헌법재판소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한 스스로 결정할 권리”라는 판례[14]와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관련 “사회활동을 통한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위해서는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형성하는데 있어 결정적 인자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자료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하여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국가는 이를 최대한 보장할 책무가 있다.”는 판례[15] 입장을 논거로 한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근거라는 견해는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인격상을 스스로 형성하기 위해 그 최소단위인 개인정보를 관리·통제하는 것은 사생활의 영역이 아닌 ‘사회적 영역’이라는 점을 논거로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16]

생각건대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이라는 공개된 공간에 존재하는 자기정보를 직접 삭제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발현하도록 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 하지만 적용되는 영역이 사이버공간이라는 물리적 제약이 없는 공간이고,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침해라고 볼 때 기존 법의 적용범위 내에 적절히 보호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별도의 기본권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면에서 ‘잊혀질 권리’는 기존의 기본권들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발현되도록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주체가 갖는 기본권”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17]

---

14) 헌재 2005. 05. 26. 99헌마513
15) 헌재 2003. 06. 26. 2002헌가14
16) 문재완, “잊혀질 권리 : 이상과 실현”, 집문당, 2016년, 20면
17) 함인선, “EU 정보보호규정법제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2012년, 32면

아울러 잊혀질 권리의 중요성과 필요성 및 권리 부재로 인한 정보주체의 심각한 피해 등을 고려해보면, 잊혀질 권리에 대한 구체적 정의,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의 범위, 기본권으로 인정할 때 충돌되는 기본권 및 그 기본권과 법익형량 방법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잊혀질 권리의 기본권성을 인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3. 잊혀질 권리에 대한 각국의 현황

가. 국가별 논의 현황

1) 미국

'잊혀질 권리' 구현을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 권리가 서로 충돌하는데, 상대적으로 미국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보다 더 강조하고 있기에 프라이버시 등을 강조하는 EU와 비교할 때 '잊혀질 권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미국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 권리도 중요하지만 수정헌법 제1조에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점에서 볼 수 있듯이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로서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다[18]. 이에 따라 프라이버시 등 권리를 좀 더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잊혀질 권리를 도입하는데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19],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공개된 진실한 정보는 자유롭게 사용하고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20] 즉 재산권의 시각에 입각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공유·활용이 정보주체와 기업 사이에서 시장의 원칙에 따라 협상을 통해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21]

그러나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따라 미국인들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18) 조소영, 전게논문 440면
19) 고경화, "잊혀질 권리에 관한 공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5년, 59면
20) 조소영, 전게논문 441면
21) 황해륙, "잊혀질 권리에 대한 소고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칙(안)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년, 3면

디지털 기억으로 인한 불편함이 커지고 있어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 방식에 있어서 유럽과 같은 법제적 해결책인 아닌 기술적 도구나 문화적 압력 등과 같은 사회 구조 속에서 해법을 찾고자 한다.[22)]

2012년 오바마 前 대통령은 "네트워크 세계에서의 소비자정보프라이버시: 글로벌 디지털경제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및 혁신 촉진을 위한 기본구상"을 발표하면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 및 기업의 의무를 설정한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A 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을 제시하였다[23)]. 이 권리장전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특정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데 특히 "기업은 개인정보를 폐기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없는 한, 개인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확실히 폐기 또는 비식별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24)]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급속한 변화의 시대에 맞춘 소비자 개인정보보호(protecting consumer privacy in an era of rapid change)"라는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가 온라인 기업의 추적으로부터 옵트아웃(Opt-out)하는 추적금지(Do Not Track : DNT)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소비자들이 브라우저 벤더(browser venders)들에게 직접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추적의 정도(수준)을 제한할 수 있도록 "추적금지 옵션[25)]을 제공하라고 명령하는 추적금지 조항"이 있다. 또한, 모바일을 이용할 때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간단하고 효과적이며 이용자들의 접근이 쉬운 모바일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3년 9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개정 법안으로 '지우개법'이라고도 불리우는 「디지털세계에서의 캘리포니아 주 미성년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제정하여 2015년부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인터넷에 올린 아동(주 내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자연인)이 투고한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였다.[26)]

---

22) 조소영, 전게논문, 441면
23) 최경진, "잊혀질 권리 - 개인정보 관점에서", 한국정보법학회 제16권 제2호, 2012. 110면
24) 고경화, 전게논문. 62면
25) "추적금지 옵션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선택권을 이용자가 갖는 시스템으로, 개인정보 추적의 정도(수준)을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2) 독일

유럽 국가 중에서 독일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이다.[27] 특히 메르켈 총리에 대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감청 시도가 알려지면서 유럽의 정부 및 기업들은 유럽의 인터넷 데이터가 역외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자고 주장했다.

독일의 경우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유명한 사건은 "1990년 볼프강 베를레(Wolfgang Werle)와 만프레드 라우버(Manfred Lauber)가 배우 발터 제들마이어(Walter Sedlmayr)를 살해한 혐의로 15년 복역 후 출소하였는데, 자신의 범죄과 관련된 기사가 위키피디아에 게재되자 이를 삭제 요구"한 사건이다.

본 사건에서 함부르크 법원은 "위키피디아로 인해 청구인의 출소 이후 갱생의 권리가 침해되고 새로운 삶이 방해되며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키피디아 독일어판'에서 삭제토록 하였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것처럼 미국법원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들어 요구를 거절해 위키피디아 영어판에서는 여전히 검색 가능하다.[28]

3) 스페인

스페인에서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사건은 인터넷 이용자 마리오 코스테야 곤잘레스(Mario Costeja Gonzalez)가 2010년 Google의 검색결과에 본인의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1998년 신문기사 링크가 표시되자 스페인 개인정보원(Date Protection Agency, AEPD)을 상대로 해당기사를 삭제해 줄 것과 Google Spain 및 Google에 검색결과를 비공개 해줄 것을 요청한 사건이다.

본 사건에 대해 법원은 '해당기사 삭제에 대한 청구'는 법원의 경매 통보를 보도한 것일 뿐이며 이는 민주주의를 이루는 한축인 언론의 자유에

---

26) 고경화, 전게논문, 63면
27) 고경화, 전게논문, 51면
28)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유럽사법재판소(ECJ), 온라인상 '잊혀질 권리' 판결", Internet & security biweekly 제2권, 2014년, 51면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했지만, ‘Google에 대한 검색결과 비공개 요청’은 검색되는 기사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기사링크를 중단하라며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였고 이에 Google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스페인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전국관구재판소에 제소했다.

이에 법원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에 선결적 판결(Preliminary Reference)을 요청하였는데 유럽사법재판소는 “Google 검색엔진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검색에서 잊혀질 권리를 갖고 있고, Google은 사용자의 시효가 지난 부적절한 개인정보를 지워달라고 요구할 때 이를 삭제해야 하며, 검색결과, Google에 링크된 해당 웹페이지의 정보가 합법적인 경우에도 링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해 Google은 사용자인 고객이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링크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여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였다.[29)]

2014년 5월 13일 구글과 곤잘레스 사건에 대한 ECJ 판결은 ‘잊혀질 권리’를 무한정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가 데이터 처리 목적과 관련하여 부정확(inaccurate), 부적절(inadequate)한 경우, 관련성이 없거나(irrelevant), 혹은 과도(excessive)한 때에 적용되며, 표현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과의 조화 및 당사자의 공적 지위(공인)와 역할 등과 균형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30)]

하지만 혹자는 이 경우 어떤 정보를 대상으로 하느냐, 또 공인 여부에 따라 사생활 침해여부가 달라지므로 그 사람이 누구이냐, 포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며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등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31)]

4) 이탈리아

1993년 부패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있는 남자가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Corriere dellra Sera’의 온라인뉴스에 그가 체포되었다는 내용의

29) 최경진, “소위 ‘잊혀질 권리’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의 유럽 법제상 의미”, 오픈넷포럼, 2014, 9면
30) 윤종수 . 김윤희, “‘잊혀질 권리’에 관한 소고-최근 유럽 최고법원의 판결과 그 파급”, 법무법인 세종, 2014년,
31) 최승필, “법의 지도”, 헤어북스, 2017년, 377-383면

기사가 남아 검색되는 점에 대해 부당하며 삭제요청을 하였는데 이탈리아 대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본 결정은 잊혀질 권리가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권리의 보장도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32]

또한 Google이 스트리트 뷰 지도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길거리의 행인들이 촬영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었는데 이탈리아 개인정보보호 감시기구는 ‘Google에 대해 촬영을 위한 차량 운행 3일 전에 운행노선을 인터넷에 올리고 행인들이 촬영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했지만 Google이 이행하지 않았다’ 며 100만 유로(약14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33]

5) 프랑스

프라이버시에 민감한 프랑스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프랑스에서는 ‘잊혀질 권리’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유럽 국가들 가운데 온라인 통제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 중 하나로,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업체, 통신업체가 전자메일이나 문자메시지에 대해 보관할 수 있는 기한을 설정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하는 권리를 포함해 보호한다.” 며 권리의 보호범위를 넓혔다.[34]

2009년 프랑스 의회 상원에서 ‘잊혀질 권리’가 포함된 「현 디지털 시대의 사생활 보장 관련 법안(De loi visant à mieux garantir le droit à la vie privèe à l'heure du numèrique, text no 93(2009-2010)」이 발의[35]되었고 이에 대해 하원은 ‘잊혀질 권리’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

32)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잊혀질 권리’의 국내 제도 도입 반영 방안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년, 6면
33) 아주경제, “이탈리아, 개인정보 보호 위반 구글에 100만 유로 벌금”, 2014. 4. 4.
34) 홍명신, “서평 잊혀질 권리” 한국문화경제학회, 문화경제연구, 14권 2호, 2011년, 26면
35)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법제동향 제41호, Feb. 2011년, 31-33면
<주요내용> ① ‘잊혀질 권리(Le droit à l'heure ; the right to be forgotten)’에 관한 연구, ② 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학교교육의 강화, ③ 인터넷 사용에 따른 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쟁점과 권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강화를 위한 캠페인, ④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CNIL)의 감시 역할 강화, ⑤ 50명 이상의 국립 또는 사립 기관내에 인터넷 상의 권리를 담당하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배치 의무화, ⑥ IP주소가 개인정보임을 명시 등

하며, 인터넷 상의 권리를 담당하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신분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등 의견을 제시했다.

2010년 프랑스 행정부에서는 디지털경제부 장관이 개인정보 유통기한 설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잊혀질 권리' 입법화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인터넷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색인하고 이를 삭제 요청할 뿐 아니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명시된 「잊혀질 권리 헌장(CHARTRE DU DROIT A L'OUBLI DANS LES SITES COLLABORATIFS DE RECHERCHE)」을 공표했다.[36]

또한 2011년 사르코지(Nicolas Sarkozy) 前 대통령도 프랑스 도빌(Deauville)에서 열린 제37차 'G8 정상회의'에서 '잊혀질 권리'를 논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할 정도로 잊혀질 권리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37]

6) 영국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은 EU의 GDPR과 영국 데이터보호법(The UK Data Protection Act 2018, DPA 2018 DP)에 의해 규율되어 왔다.

특히 잊혀질 권리와 관련하여 영국 의회의 상원에서는 "European Union Committee – Second report, EU Data Protection Law: a right to be forgotten?"라는 보고서를 통해 EU의 잊혀질 권리 법제화는 'no longer reasonable'(불합리) 하고 'unworkable in practice'(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 등의 의견을 밝혔다.[38]

최근 영국이 EU에서 탈퇴함에 따라 브렉시트 이후 영국-EU 간 데이터 역외이전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영국 총리실에서 영국이 EU GDPR의 영향에서 탈피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함에 따른 것이다. 영국의 개

---

36) 20minutes.fr, 13 octobre 2010, <http://www.20minutes.fr/web/facebook/608459-web-ure-charte-droit-oubli>에 의하면 "Microsoft France는 서명하였으나, Google, Facebook 등은 서명을 거부했다."

37) European Journalism Centre 2011. 1.13, <http://www.ejc.net/media_news/france_wants_to_put_internet_regulation_on_the_g8_agenda/>

38) 전병헌, "한국의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한 정책제언 자료집", 2015년 국정감사 정책제언 자료집, 2015.10. 6. 22면

인정보보호 수준 및 영국-EU 국가 간 데이터 교류 조건의 변화와 관련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12월 전환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영국과 EU간 데이터 이전을 위한 적정성 결정 문제가 공식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를 대체할 전송 매커니즘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교역 비중이 큰 우리나라 개인정보 감독기구도 양 진영의 움직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가이드 라인 개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39]

7) 일본

일본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40]인데 이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공급자 책임제한법에 따라 온라인상 삭제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고, 검색엔진 측에서도 자체적으로 삭제요청에 응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41]

일본에서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시초적인 판례는 2015년 사이타마 지방법원의 결정이다. 본 사건은 과거에 남성이 여고생에게 돈을 건네고 외설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아동 매춘 포르노금지법 위반으로 50만엔 벌금형을 받게 되었는데 이후 3년이 경과된 뒤에서 본인과 관련된 기사가 검색되기에 삭제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원심은 2014년 잊혀질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색 결과에서 남성의 체포기록을 삭제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구글은 이에 항고했고, 2016년 "벌금을 납부한 후 5년 이내의 현 단계에서는 아직 공공성은 손실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요구사항이나 효과가 명확하지 않고, 명예권과 프라이버시권에 따른 금지 청구와 같은 것이며, 잊혀질 권리로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고, 2017년 일본 최고

39)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EU간 GDPR 이슈 검토", 2019년 2월 2주
40) 소가베 마사히로.양소영, "[번역]일본에 있어서 잊혀질 권리에 관한 판례 및 논의상황", 강원법학 제49호, 2016년, 34면
41) 김광재, "'온라인 상' 잊혀질 권리의 현황과 실현방안", 법과사회 57호, 2018년 4월, 107면

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판시 하였다. 본 판례는 “잊혀질 권리를 별개의 권리가 아닌 프라이버시권 등 이미 인정된 권리에 포함하여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42)]

나. GDPR상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주요 내용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GDPR 내 규정은 제17조 삭제권, 제18조 처리제한권, 제19조 통지권, 제21조 반대권으로 볼 수 있다.

잊혀질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조문은 제17조로, 내용을 요약하면 개인정보관리자(controller)가 정보주체의 삭제권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① 목적이 소멸한 경우 ② 동의를 처리한 경우 ③ 정보주체가 처리를 반대하는 경우 ④ 불법적으로 처리된 경우 ⑤ 법적으로 삭제가 필요한 경우 ⑥ 아동에게 제공할 정보사회 서비스와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한 경우로 크게 6가지로 구분하였다.

개인정보관리자(controller)가 삭제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① 표현 및 정보 자유에 관한 권리 행사를 위한 경우 ② 공익적 임무를 위한 경우 ③ 공익을 위한 보건 목적인 경우 ④ 연구 통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⑤ 법적 청구권의 입증·행사·방어를 위한 경우이다.

또한 공개·제공된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할 때에는 가용한 기술과 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수령인에게 정보주체의 삭제 요청사실을 알리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에 규정된 처리제한권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를 차단하거나 제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처리가 제한되면 개인정보관리자(controller)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 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경우 ② 법적 청구권의 입증·행사·방어를 위한 경우 ③ 제3의 개인이나 법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경우 ④

42) 김광재, 전게논문, 108면

EU 또는 회원국의 주요한 공익상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처리가 제한되지 않는다.

제19조는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정보관리자(controller)는 처리제한을 해제한 경우에 정정이나 삭제 또는 처리의 제한에 대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1조는 자신의 정보처리에 대해 반대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주체가 자신의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검색엔진 등 서비스 제공자에게 검색 결과 목록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43)]

43)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EDPB(유럽 개인정보보호이사회)의 검색엔진 관련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내용 분석”, 2020년 7월 2주

Ⅲ. 역외적용 사례 및 대응방안 검토

1. 역외적용의 의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이란 “자국의 영역 외에 소재하는 외국인 및 물건에 대해, 또한 자국의 영역 외에서 행해지는 행위에 대하여 자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44]

역외적용은 ‘한 국가의 “관할권”이 “역외”에서도 미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논의이다. 역외적용의 법리는 특히 미국에서 반독점법, 증권법, 지적재산권법 등의 영역에서 외국에서 외국인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하는 상황을 일컫기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타국영역에까지 관할권을 확장하여 사람, 물건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행해지는 행위에 대한 간섭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국가 관할권과의 저촉 또는 충돌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국내법의 역외적용은 장기간에 걸친 국제 관습의 축적이나 여러 국가가 토의를 거쳐 조약 체결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국제규범의 성립과는 달리, 한 나라의 국내법을 사실상 국제규범으로 승격시키는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내법의 역외적용이 성공하려면 해당 규제가 명분이나 가치가 다른 나라에서도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보편적 타당성을 가진 법규범이어야 함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2. 각국의 역외적용 사례[45]

가. 미국의 자국법 위반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사례[46]

---

44) 이상돈, “국제거래법”, 1992년, 77-78쪽

45) 법무법인 세종, “행정규제 위반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확보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연구, 2017년, 9-51면

46) 원재천, “자국법의 역외적용과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법무부 국제형사과 연구용역과제”,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2011년, 7-30면

미국도 초기에는 엄격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역외적용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다가 1945년 Alcoa사건에서 독점금지법을 적용한 것을 계기로 역외적용 되기 시작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945년 Alcoa사건(US v. Alumium Co of America)에서 “외국회사가 미국영토 외부에서 한 행위라 할지라도 이들 외국기업들에 의한 카트텔 협정이 미국 알루미늄 수입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도 영향을 미쳤다면 이러한 담합행위에 대하여 이전까지 국내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던 셔먼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Hand판사는 “외국에서의 국제 카르텔이 위법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 통상에 영향을 미칠려고 의도(intent to affect U.S Commerce)’가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국의 독점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소위 “영향이론(Effect Doctrine)”을 확립시켰다.

이후 1983년 Timberlane사건(Timberlane Lumber Co v. Bank of America)에서 위 영향 이론을 수정하여 자국의 이익과 외국의 이익의 형량을 통해 자국법 적용의 이익이 큰 경우에 비로소 자국법의 적용을 인정하는 이익형량 이론(Interest Balancing Theory)을 정립하였다.

본 판례에서는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을 위한 세가지 요건을 제시하였는데 “① 법 적용을 위해서는 미국의 대외무역에 직접적이거나 의도된 어떠한 영향이 있어야 하고, ② 법 위반의 효과가 원고에게 상당한 손해를 줄 정도로 커야 하고, ③ 역외적용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미국의 대외통상에 대한 이익이 외국의 국익과 관련된 부분보다 커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가지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7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는데 “① 외국법 또는 정책과 충돌 정도, ② 당사자의 국적 및 회사의 주소나 주영업소, ③ 외국에서 집행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법의 도달, ④ 미국에 대한 영향과 외국에 있어서의 영향에 대한 상대적 비교, ⑤ 미국의 통상에 영

향을 미칠 분명한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 ⑥ 이러한 영향의 예견가능성, ⑦ 외국에서의 행위와 미국 내에서 행위의 위반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 등이다.

주로 독점금지법에서 논의되던 역외적용과 관련하여, UN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법적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 ICCPR)」을 통해 “서명국들이 자국 시민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그러한 공격이 발생한 원천지에 무관하게 법적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효과주의를 활용한 관할권의 역외적용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47)]

1998년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 Act, FCPA, 1977년 제정) 개정시 외국사업체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 거래한 외국사업체, 미국 영토내에서 외국인이 외국 공직자에게 우편 기타 수단으로 뇌물을 제공한 경우 역외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초기 엄격한 속지주의를 고수했으나, 이후 독점금지법 중심으로 미국 경제정책, 국제사회여론에 따라 효과이론, 이익형량이론, 합리성 원칙 등 판례를 통해서 특정한 요건하에서 역외적용을 확대 가능성을 모색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어서 독점금지법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법, 해외부패방지법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해외에 본점을 두고 미국 영토 내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상 행위에 대해서도 미국법 적용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나. 유럽의 자국법 위반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사례

유럽도 유럽경쟁법을 중심으로 역외적용 사례를 축적해 나가고 있다. 즉 유럽공동체조약 제81조(경쟁제한적 거래관행) 및 제82조(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유럽이사회의 기업결합규제규칙(EU Merger Control Regulation)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사실 이 규정에는 역외적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

4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실효적 규제방안 연구”, 2015.12월, 28면

으나, 그 대상을 역내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정법의 역외적용 가능성을 열려 있다고 해석된다.[48] 이에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경제적 단일체 이론 및 실행지 이론 등을 통해서 발전하여 왔다.

1964년, 1965년, 1967년에 EC 역내기업 6개사와 역외기업 4개사의 염류 카르텔사건에 있어서 유럽사법재판소는 EU경쟁법을 영향이론에 의지 않고 관할권을 근거로 소위 "귀책이론(행위귀속이론) 또는 경제적 단일체 이론(Economic Single Unit Doctrine)"을 통해 역외 적용하였다.

즉 역내에 있는 자회사가 독립된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시장행동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역외에 있는 모회사의 지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제적 단일체(One Economic Unit)를 이루는 자회사와 모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회사에게 자회사의 책임을 귀책"시키는 것이다.

이 판결 이후에도 다수 판결에서는 "경쟁제한 행위"를 한 회사가 역외에 있더라도 계열회사가 역내에 있는 한 "경쟁제한 행위를 역내에서 한 것으로 간주하여" EU경쟁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EU 역외에 있는 목재 펄프를 생산하는 40개회사(캐나다 6개, 미국 10개, 핀란드 10개, 노르웨이·포르투갈·스페인 각 1개) 및 이들 국가의 펄프지 사업자 단체간에 체결한 카르텔인 Wool Pulp사건에서 경쟁제한 행위의 행위지 개념을 다소 확장 적용하였다.

본 판결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범죄의 결과 발생지 뿐만 아니라 행위지도 포함한다'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유명한 "Lotus 판결"을 원용하여 "경쟁제한적 행위의 행위지 개념에 카르텔 구성이라는 공동행위를 합의를 한 곳 뿐만 아니라 그 합의를 실행한 곳(Place of Implementation)을 포함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로써 역외기업이 역내 구입자와 접촉하고 있는 한 역내의 자회사·대리점·하위대리점 등에 의존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48) 법무법인 세종, 전게논문, 9-51면

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도 “유럽 단일권리(Unitary Right) 시행, 다수국가의 병행권리(Parallel Rights) 시행, 다른 국가의 활동에 역외효과를 줄 수 있는 본국법(National Law)에 근거한 권리 시행” 등을 통해 역외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그 외 인터넷상 행위에 대한 역외규제는 2000년 인터넷상 혐오 표현과 관련된 “야후사건” 및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2014년 “구글스페인 사건”이 대표적이다.

야후 사건은 프랑스 유대인 단체인 LICRA와 UEJF는 2000년 4월 나치 기념품을 전시·판매사이트를 호스트하는 야후를 상대로 미국 내 해당 사이트에서 해당물품을 내리는 등 금지명령을 해달라는 소를 프랑스법원에 제기하였다.

프랑스법원은 2000년 11월 야후의 웹사이트가 프랑스어 배너광고를 띄우는 등 의도적으로 프랑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행위를 하였으므로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야후에 프랑스인들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지리적 필터링(geographical filtering) 도구를 이용한 선별적 차단조치[49]”를 취하도록 명령하고 10만 프랑의 벌금을 부과하였고, 미국 법원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얻어 내었다. 결국 야후는 프랑스 국내법을 준수하게 되었는데, 인터넷 업체를 대상으로 프랑스 국내법을 성공적으로 역외적용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2014년 소위 잊혀질 권리 사건은 전술한 바와 같으며, 이 판결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이 위 결정을 집행하는 “방식”에 관하여 명시적 지침을 주지 아니하였으나, 구글은 “도메인네임 확장자 조정 방식[50]”을 활용하여 이행하고 있다.

---

49) 지리적 필터링은 검색엔진 이용자의 지리적 위치(geolocation)를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색결과의 차단을 “검색질의의 지리적 출발점(geographica origin of the search query)”에 따라 조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50) 구글은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ccTLD; country code Top-Level Domain)”을 활용하여 검색결과를 조정하여 구글이 유럽 이용자들의 ccTLD를 적절한 도메인으로 돌려 서비스를 조정하고 있다.

유럽 역시 유럽경쟁법 및 지적재산권법 등을 중심으로 역외적용 이론이 발전되어 왔으며, 인터넷상 역외적용 사례는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규제의 기준이 개별국가 차원에서 정립된 것이 아닌 나치와 관련된 혐오표현 등 다수 국가나 국제협력체 등을 통해 합의된 규범을 적용한 점이다. 특히 잊혀질 권리는 이미 유럽 국가들로부터 강한 공감을 얻고 있어서 역외적용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야후사건 판결 집행 시에 사용된 지리적 필터링을 이용한 선별적 차단조치는 비록 우회가 가능한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규제 권한의 행사 범위를 자국 영토 내로 한정하여 역외적용 시 외국법과의 충돌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방안으로 고려해 볼 만 하다.

셋째, 국가코드의 최상위 도메인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조정하는 구글의 "도메인네임 확장자 조정 방식"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잊혀질 권리 간의 이익형량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규제방안으로 도입해 봄 직하다.

3. 개인정보의 역외이전

가. 개인정보 역외이전의 필요성

정보화 사회로도 불리는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는 곧 돈'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 기업의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를 배경으로 맞춤형 광고를 지원하는 애드테크(Ad-Tech)가 광고시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점도 개인정보의 적절한 활용이라는 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51]

51)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GDPR 시행으로 규제 불확실성 직면한 애드테크", 2019년 ; "애드테크(Ad-Tech)란 쿠키나 광고 ID를 기반으로 이용자 개개인의 소비 행태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광고기법, 이런 방식은 광고주사 사전 설정한 조건에 따라 광고 노출 대상 및 매체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매틱 광고"라고도 불림

이러한 상황에서 Google, Amazon, Twitter 등 세계 유수 기업들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해당 국가 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기업들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상품/서비스 제공이나 소비자들의 행태 모니터링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악용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 초점을 두고 GDPR에서는 개인정보의 역외이전과 관련된 매커니즘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간 조화를 꾀하고 있다.

나. GDPR의 역외이전 규정

개인정보관리자(controller)와 처리자(processor)는 개인정보를 "제3국 또는 국제기구로 이전하거나 이전 후 처리" 하는 경우 GDPR에 정해진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52)53)] 이 요건은 이전된 개인정보가 "제3국이나 국제기구로 재이전" 되는 경우(onward trasfer)도 포함된다.

GDPR은 역외이전이 가능한 경우를 "적정성 결정에 따른 이전(Transfers on the basis of an adequacy decision)", "적절한 보호조치에 의한 이전(Transfers subject to appropriate safeguards)", "특정상황에 대한 예외(Transfers subject to appropriate safeguards)"로 세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5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전게 가이드북, 142면
53) GDPR 내에서 "EU 회원국(27개) 및 아이슬란드.노르웨이.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되는 EEA(European Economic Area)"와 데이터 이전은 통상 보호조치가 불필요함

<그림1> 역외이전 흐름도[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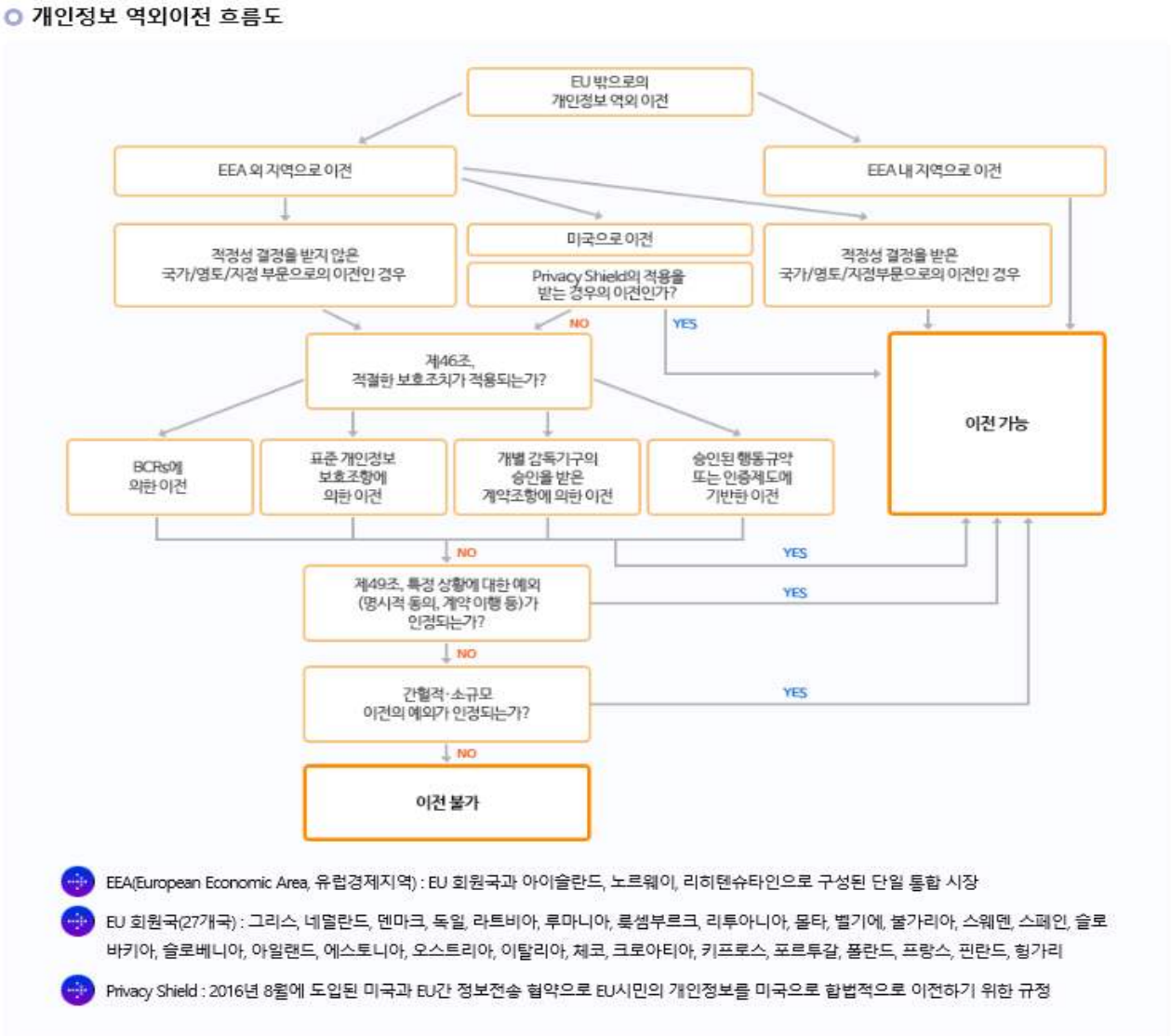

1) "적정성 결정에 따른 이전(Transfers on the basis of an adequacy decision)" [55]

집행위원회는 제3국(제3국의 영토, 하나 이상의 지정된 부문 포함) 또는 국제기구가 법치주의, 인권, 관련 법제도 등을 고려[56]하여 적정한 보호 수준이 되는지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유럽 개인정보보호이사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 이하 EDPB)와 협의하여 적정한 보호 수준이 있는

54) KISA "GDPR 대응지원 센터" https://gdpr.kisa.or.kr/gdpr/static/trendlink.do
55) GDPR 제45조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의 제3국, 국제기구로 이전은 적정한 보호수준이 있다고 집행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특정한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함
56) GDPR 제45조 제2항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는 '보호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법치주의, 인권, 공안, 국방,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지원 및 권고, 국제협정 등 요소를 고려해 평가한다."

것으로 결정되면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할 수 있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적정성 결정을 폐지·수정·정지[57]할 수 있고 최소 4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표 4> 적정성 평가절차[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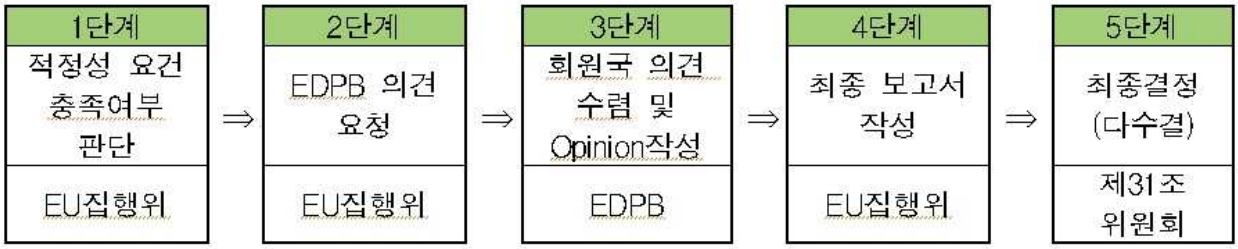

2) "적절한 보호조치에 의한 이전(Transfers subject to appropriate safeguards)" [59]

개인정보관리자(controller)나 처리자(processor)는 적정한 안전조치를 제공한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3국 또는 국제기구에 이전할 수 있는데, 이 행사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법적 구제책이 제공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제46조 제1항)

적정한 안정조치는 감독기관의 특별한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특별한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특별한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개인정보관리자(controller)나 처리자(processor)와 제3국이나 국제기구의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처리자(processor) 또는 개인정보 수령인 간의 계약 조항이 있는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 정도가 미약한 경우에 '승인'이라는 절차를 두어 보호 정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특별한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정부부처 또는 관련기관 간 법적 구속력이 있고 강제할 수 있는 장치', '정보보호 표준 조항'이 있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적정한 안전조치가 강화된 경우이다.

57) GDPR 제45조 제5항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국이나 국제기구가 더 이상 적정한 보호 수준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소급없이 제3항의 결정을 철회, 수정, 중지할 수 있다."
58)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전게가이드북, 142면

<표 5> 감독기구의 승인[60]

특별한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승인이 필요한 경우
(a) 정부부처 또는 관련기관 간 법적 구속력이 있고 강제할 수 있는 장치 (b) 제47조에 따른 의무적 기업 규칙(Binding Corporate Rules, 이하 BCRs) (c) 제93조(2)의 검토 절차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정보보호 표준 조항 (d) 감독기관이 채택하고 제93조 (2)의 검토 절차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정보보호 표준조항 (e)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한 것 등 적정한 안전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 및 강제력이 있는 제3국의 개인정보관리자(controller)나 처리자(processor)의 약속을 포함한 제40조에 의거한 공인 행동강령 (f)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한 것 등 적정한 안전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 및 강제력이 있는 제3국의 개인정보관리자(controller)나 수탁자처리자의 약속을 포함한 제42조에 의거한 공인인증 메커니즘	(a) 개인정보관리자(controller)나 처리자(processor)와 제3국이나 국제기구의 개인정보처리자, 처리자(processor) 또는 개인정보 수령인 간의 계약 조항 (b) 공공당국이나 기관 간의 행정협정에 삽입될 것으로 강제력이 있고 유효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포함한 규정

3) "특정 상황에 대한 예외(Transfers subject to appropriate safeguards)" [61]

적정성 결정이나 적정한 안전조치가 없는 경우 제3국이나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하기 위해 제49조 제1항 각호의 특정상황에 대해 예외를 두고 있다.

즉 적정성 결정이나, 적정한 안전조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역외이전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한정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역외이전이 가능한 특정상황은 "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 계약과 관련된 경우, 공익상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적 청구권의 입증, 행사·방어를 위한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정보공개의

60) KISA "GDPR 대응지원 센터", GDPR조문, https://gdpr.kisa.or.kr/gdpr/static/gdprProvision.do

목적인 경우” 에 이전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 이전이 한정된 경우, 개인정보관리자(controller)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시” 하는 경우이다.

다. 잊혀질 권리와 역외이전

잊혀질 권리 즉 삭제권의 적용 범위가 국경을 초월해 확대 적용되는지와 관련하여 2019년 9월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의미있는 판결을 했다.

사건개요는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가 Google에게 정보주체의 검색 결과 목록 삭제요청을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Google은 EU 역외에까지 잊혀질 권리를 강요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고 독재국가가 이를 악용할 소지도 높다며 반박하였다.

Google은 이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Microsoft, 위키미디어재단, 언론의 자유에 대한 기자위원회 등도 Google의 입장을 지지했다.

이에 2019년 9월 유럽사법재판소(ECJ)는 EU역내에서만 해당 링크를 삭제하면 된다는 Google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하였는데, 이는 잊혀질 권리가 EU 역내에서만 적용된다는 것[62]으로 국제관계를 고려하여 GDPR에 삭제권을 규정한 기본취지 및 목적과는 다소 상반된 결정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 EU 개인정보보호 이사회(The Euopean Data Protection Board; EDPB)는 온라인 검색엔진에 적용되는 EU GDPR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버전을 2020년 7월 7일 공개했다.[63]

공개 내용에서는 GDPR 제17조에 명시된 ‘삭제권(잊혀질 권리)’은 온라인 검색엔진과 관련하여 정보주체가 본인의 데이터가 포함된 웹 페이지에 대한 링크 및 검색 결과 목록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의 근거이고, 특히 제21조 ‘개인정보 처리에 반대할 권리(반대권)’ 역시 정보

62) 박형옥, “사법재판소, 잊혀질 권리는 EU 역외에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 저작권 동향, 2019년 22호, 1면
63)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EDPB의 검색엔진 관련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내용 분석”, 2020년 7월 2주, 3면

주체가 검색엔진 서비스 제공자에게 검색 결과 목록 삭제를 요청할 법적 근거로 적용 가능하다고 하여 ‘반대권’도 온라인상 잊혀질 권리의 근거가 된다고 기재했다.

4. 역외적용 가능성과 대응방향 검토

세계 각국은 국제정책 및 국제사회 여론 등 국가경계를 넘어서서 발생하는 효과를 감안하여 역내국가와 역외국가간의 이익형량을 거쳐서 역외적용을 인정하고 확장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다만 역외적용을 하는 경우에도 역외적용되는 역외국가 내에서 해당 법령의 규범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는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 방법으로 국제협력체의 규범으로 명시한다거나 개별국가간 조약으로 규정하는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지리적 필터링이나 도메인네임 확장자 조정방식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역외적용을 지원함으로써 역외적용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잊혀질 권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 인식제고가 필요하며, 이러한 공감대 형성을 통한 법규법 제정 등 규범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잊혀질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관련 기술이나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Ⅳ. 국내 제도 및 대응현황

1. 국내 제도 고찰

가. GDRP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정비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기존에 크게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있었다. 그러나 2020년 2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으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제가 일원화 되었다.

특히 이번 개정은 개정이유[64]에서 볼 수 있듯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해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능을 일원화하고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 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다.

이러한 입법자들의 노력은 EU의 GDRP의 시행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EU의 GDRP에서 규율하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관련하여 다소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GDRP은 삭제권, 처리제한권, 개인정보 이동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였고, 개인정보의 삭제 또는 확산방지를 요구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 부분에서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및 처리제한을 요구하는데 한정되어 그 범위가 다소 협소하다고 할 수 있다.

64) 개정 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핵심 자원인 데이터 이용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사회적 규범을 정립하여 데이터의 안전한 이용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주무기관,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각각 분산되어 있어 개인정보의 적절한 보호를 위한 한계가 있기에 '가명정보 이용', '감독기구의 일원화', '법령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과 개인정보의 보호의 조화를 이루고자 함

<그림 2> GDPR과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의 비교65)

나.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잊혀질 권리

1)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첫째,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가명처리’로 정의하였다.(제2조 제1호의2 신설)

둘째, 조직과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사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였다.(제7조, 제7조의8 신설, 부칙 제9조).

65) KISA “GDPR대응지원센터”, https://gdpr.kisa.or.kr/gdpr/static/infoSubjectsRights.do

셋째. 개인정보의 활용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최초 수집 목적과 관련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일정한 조건 즉, 정보주체에 대한 불이익 발생 여부,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조치 유무 등을 고려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 신설).

넷째,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규정하였고, 가명정보 결합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토록 하여 안정성을 강화했다.(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또한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했다(제28조의4 신설).

다섯째, ‘특정 개인을 확인’하기 위한 가명정보 처리는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과징금으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제28조의5 및 제28조의6 신설).

여섯째, 정보통신망법에서 일부 규정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정들을 본 법으로 일원화”하고, 이에 따라 기존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특례”를 규정했다(제6장 신설 등).

2) 잊혀질 권리의 구현

우리나라 현행법 상 ‘잊혀질 권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제1항의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권과 관련된다.

즉 법 제35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정정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즉시 요구내용을 확인하여 정정 또는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조치 후에 정보주체에게 조치 내용을 알려야 하며, 특히 삭제된 개인정보가 다시 복구되거나 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해 GDPR의 잊혀질 권리와 달리 개인정보보호법의 삭제청구권은 ‘열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잊혀질 권리와 차이가 있다는 주장[66]이 있다.

또 같은 법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과 관련된 경우 ③ 공공기관의 법률에 따른 의무 수행하는 경우 ④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정보주체의 처리 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아울러 제58조 제1항 ‘적용의 일부 예외’ 부분도 잊혀질 권리와 관련되는데 ①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②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③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한 정보 ④ 언론의 취재·보도, 종교단체의 선교, 정당의 선거 관련 행위 등 각 단체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집·이용되는 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 구조의 특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수집대상으로 명시된 경우 삭제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예외가 더 많아질 수 있다.’며 비판적 입장인 의견[67]이 있으며, 정보주체의 침해사실 소명 부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68]도 있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의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제6장에 신설되었는데, 제39조의3 제1항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계약 이행, 요금 정산, 타 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었는데 제39조의6에서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등 조치를 의무화 하였으며, 제39조의7에서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완전히 파기하고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하였다.

---

66) 법무법인 인, “디지털 소멸(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 2016.12월, 36면
67) 법무법인 인, 전게논문, 37면
68) 조소영, “잊혀질 권리 : 정보의 웰다잉을 위한 법리 검토”, 한국공법학회 제41집 제2호, 2012, 4월, 448-449면

아울러 제39조의14를 신설하여 ‘방송사업자 등이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3) 개인정보 국외 이전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9조의12를 신설하였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국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고, 국외 제공시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이전국가, 이전일시와 방법, 이전받는 자의 성명 등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전 받은 정보를 다시 재이전하는 경우에도 본 규정을 적용토록 하여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보호를 강화하였다.

2. 대응 현황

가. 국회의 대응 현황

유럽의 GDPR제정 등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 우리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노력을 지속해 왔다.

19대 국회에서는 당시 카드사 등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상황임을 고려해 개인정보

와 관련된 ‘정책·제도의 개선권고권, 이행점검권 및 이를 위한 자료제출요구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 위촉권’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부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법정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하였다.

개인정보 보호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이나 수단으로 취득한 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게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범행을 통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기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수준을 강화하였다.(안 제70조 각 호 및 제74조의2 신설)

아울러 심재원 의원 대표발의한 개정법에 따르면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돈을 받고 제공”한 사안에서 현행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경우 동의사항 별로 구분을 지어 정보주체가 자신의 동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점을 우려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면 등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및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명시(안 제22조 제2항 신설)”한다는 규정을 두어 국민의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 중 하나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더욱 보호하고자 하였다.

20대 국회에서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가명처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상향 및 조직 일원화, 개인정보 활용확대를 위한 조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별도의 전문기관이 수행, 가명정보 처리 위반시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 처리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특례 규정 등을 신설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대대적으로 정비 하였다.

21대 국회에서는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2020년 7월 1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고,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이 보호위원회로 이관됨

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갖는 위상을 고려할 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청문을 거치도록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 법률안(안 제7조의2 제2항 후단 신설)을 발의하였다.

허은아 의원 대표발의(2020년 7월 29일)로 ‘싸이월드’의 폐업과 관련 이용자가 회수하지 못한 개인정보가 모두 사라질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해당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장[69]하려 취지의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며,

김남국 의원 대표발의(2020년 8월 7일)로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를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 법률안[70]이(안 제34조의2 제1항 및 제39조의15 제1항 제5호) 발의되어 있다.

아울러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2020년 9월 3일)한 “개정안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관련 감염예방을 위해 감염자 동선을 공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공중위생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하게 되는데, 사용목적이 다한 경우에 지체 없이 파기할 필요성이 있으며, 긴급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할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형벌 또는 과태료를 신설하여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려는 일부개정 법률안” [71]이(안 제58조 제4

69)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려는 경우 보관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전송을 요구할 권리와 이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전송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70)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는 등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가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더욱 취약해지면서,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의무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발의함

71) 현행법은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의 적용을 배제하되, 이 경우에도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항, 제73조 제1호, 제75조 제2항 제4호·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 발의되어 있다.

나. 정부의 대응 현황

1)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정부는 2012년도부터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추진하여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체계적인 추진 및 안정적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

제1차 기본계획(2012년~2014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적 정착, 제2차 기본계획(2015년~2017년)에는 각 이해관계자들의 역량강화와 능동적 실천을 위한 주요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이에 1, 2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추진에 따라 관리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등 법체계 정비 관련 과제들은 보통이상 수준의 평가를 받았으나, 글로벌 상호 운용성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산업의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72]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금융, 정보통신, 의료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계속 발생했다.

3차 기본계획(2018년~2020년)에는 신용카드 본인확인서비스 개시, 데이터 3법 개정안 발의,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및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실시 등 이해관계자의 능동적 참여를 위한 계획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 중심의 변화 등 디지털 혁신 및 글로벌 소셜 미디어 등 글로벌 서비스 보편화 등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위협 증가하였고,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이 자국 내 데이터 활용은 촉진하면서도 데이터 안보, 자국민 보호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제적 패러다임이 변화하였다.

이에 4차 기본계획(2021년~2022년)에는 개인정보 처리환경 등을 고

72) 개인정보보보호위원회,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2016.12월,

려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실질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였으며 사업자의 인식제고 및 전문 인력확보 및 관련 지원 노력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표 6 > 1~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과제[73)]

구분		내용
1차	목표	보호체계 정립, 보호역량 강화, 침해예방 및 대응강화, 사회적 인식제고
	추진과제	법체계 정비, 국제협력 강화, 인력보강 및 전문화 강화,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침해예방 대책 수립, 정보주체 권리보장 강화, 자율규제 활성화, 홍보강화 등
2차	목표	거버넌스 구조 선진화, 보호 관리체계 강화, 보호 실천문화 조성, 선순환 생태계 조성
	추진과제	권리보장 실질화, 홍보강화, 예방 및 권리구제 강화, 보호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3차	목표	이해관계자의 능동적 보호활동 강화, 보호제도의 현실화 및 글로벌 수준제고
	추진과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화, 상담체계 및 피해구제 제도 고도화, 정보주체 권리 및 책임의식 제고, 자율적 보호체계 강화, 지능정보 기반 보호 및 산업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제도 적용 현실성 제고, 법령 간 정합성 확보 및 제도 선진화, 글로벌 리더십 확보, 법·제도 개선 사회적 논의 강화 등
4차	목표	개인정보 보호 정책 혁신 및 정보주체 권익 증진, 자율과 협력 기반의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추진과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개인정보 보호 제도적 기반 확대, 취약·소외 계층 맞춤형 권리 보장,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체계 고도화,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지원활동 강화, 피해구제 제도 개선,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정보주체 고충·피해지원서비스 확대, 교육허버 구축 및 맞춤형 교육강화, 보호문화 조성 및 실천력 제고

7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정책>기본계획·시행계획>기본계획
https://www.pipc.go.kr/np/default/page.do?mCode=D050010010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사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여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2020년 8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종인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장관급)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는 동전의 앞뒷면[74]” 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선 감수성과 함께 데이터의 활발한 활용을 조화시키는 균형 감각과. 여러 정부 부처·기구와 협업하게 하고 조정을 이끌어 내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런 중요성 때문에 국무총리 산하로 하고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했다[75]” 고 설명했다. 이는 현 정부의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의 양면성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려는 의지로 보여 진다.

<그림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직도[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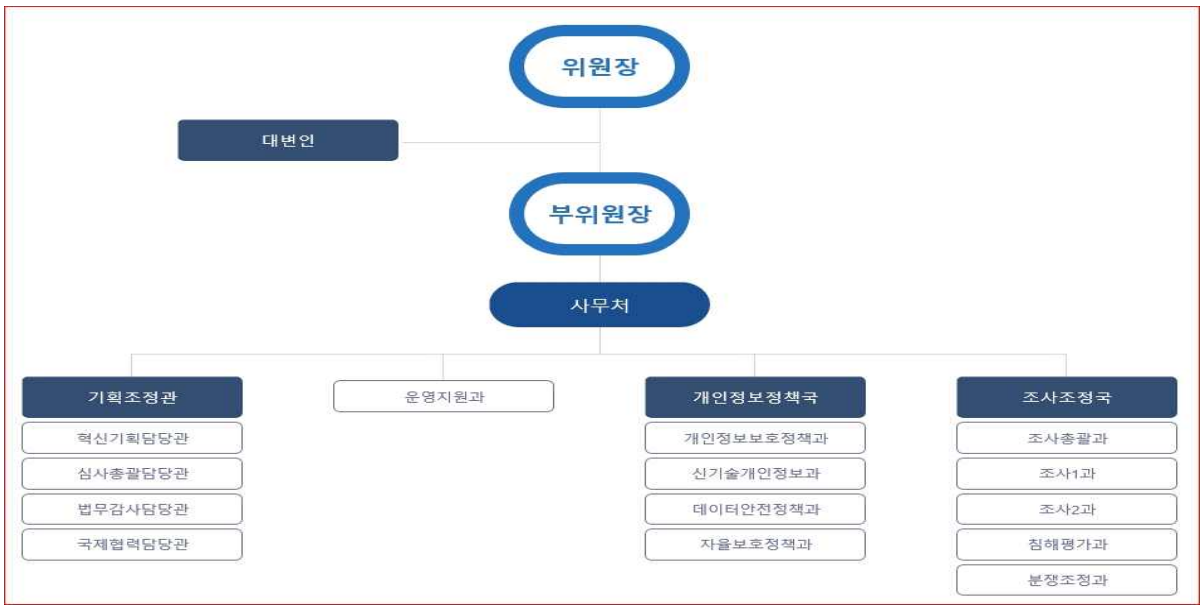

74) 오마이뉴스 . 문 대통령 "데이터 활용-개인정보 보호는 동전의 앞뒷면", 2020. 8. 7
75) 동아일보. 文대통령 “개인정보보호,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 2020. 8. 7
7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회소개 > 조직구성 > 조직도
https://www.pipc.go.kr/np/default/page.do?mCode=F060010000

3) 잊혀질 권리 관련,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77)

인터넷 상 잊혀질 권리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4월「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권을 잃어버린 이용자에 대한 구제를 목표로 하면서도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즉 개인의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가급적 줄일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마련하였다. 또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을 보장하여 이용자가 인터넷에 게제된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타인의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게시판 관리자는 블라인드 처리하고, 검색서비스 제공자는 캐시 등 삭제를 통해 검색되지 않도록 하여 이용자의 자기게시물 접근 배제요청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의 특징으로는 이용자가 게시한 글(댓글 포함)과 사진, 동영상 등은 물론이고 “사자(死者)가 생전에 접근배제요청권의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 또는 사자(死者)의 유족[78]이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경우, 사자(死者)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한 글(댓글 포함), 사진, 동영상 및 이에 준하는 기타 게시물(지정인과 유족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인의 의견에 따른다)도 포함”한다는 점이다.

사업자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게시판 관리자의 경우 요청한 자의 입증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용자 본인의 자기게시물’이 확인되거나 합리적으로 추정될 수 있는 경우 “블라인드 처리”를 통해 이용자의 접근배제권을 보장한다.

검색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요청인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게시판 관리자가 “블라인드 처리” 등 조치를 한 경우 이 통보서를 근거로 하여 캐시 삭제 등의 방법으로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이트 폐쇄, 관리 중단 등 특별

77) 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2016. 4월
78) 유족의 범위는 ‘사자(死者)의 배우자, 직계비속’으로 한정, 다만 모두 없는 경우는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유족이 됨, 동 순위 유족이 다수 있는 경우 전원이 합의하여 행사함

한 경우가 발생하여 게시판 관리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증빙자료를 기초로 검색목록 배제 여부를 결정하여 조치한다.

<표 7>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 개요[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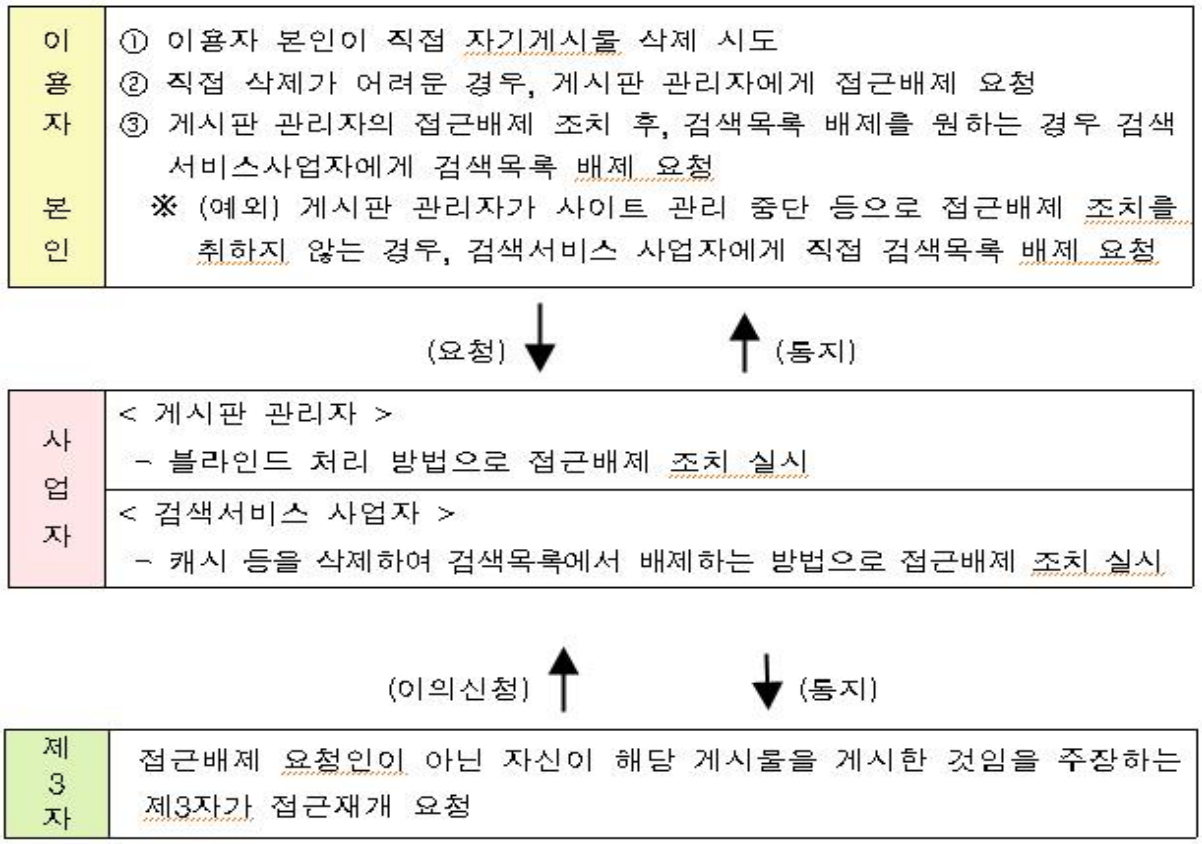

이러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은 유럽사법재판소 (ECJ)의 기준과 차이점을 보이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은 지침일 뿐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고, ② 객체에 있어서 본인이 작성한 인터넷 게시물에만 한정되므로 타인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링크까지 포함되는 유럽사법재판소 (ECJ)의 기준보다 그 보호범위가 좁다는 점이다.

그러나 ③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은 본인 뿐 아니라 사자의 위임 지정인(유족)까지 포함하므로 주체와 관련하여서는 그 범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79) 방송통신위원회, 전게가이드라인, 2면

<표 7> 유럽사법재판소 (ECJ)와 한국방송통신위원회(KCC) 잊힐 권리의 차이점[80]

구분	ECJ(유럽사법재판소)	KCC(한국방송통신위원회)
법적 구속력	있음	없음
주체	본인	본인 또는 사자의 위임지정인(유족)
객체	본인 또는 타인이 작성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링크	본인이 작성한 인터넷 게시물
상대방	국내·외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	게시판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검색서비스 제공사업자, 한국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
적용제외	공익이 사익보다 더 큰 경우	법률 또는 법령상 보존의무가 있는 인터넷 게시물 또는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가이드라인 전수조사'에 나서 꼭 필요한 가이드라인은 집행력이 강한 법제화에 나서고 불필요한 가이드라인은 폐지하기로 하였는데,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은 법령 해석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하여 해설서로 개편[81]한다고 하였다.

다. 기업의 대응 현황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에 대한 책무 부과는 관련 기업에게는 경영상 커다란 걸림돌일 수 밖에 없다.

특히 한국판 잊혀질 권리의 표현인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하여 2016년 5월 초안 설명회에서 네이버는 '지식인 서비스'를 예로 들어 질문과 답변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서비스의 경우 접근배제 요청으로 원래 질문을 삭제할 경우 서비스가 퇴색[82]한다고 주장

80) 최종선, "잊힐 권리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미디어와 인격권 제2권 제1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최종선, 2016.10.27., 76면
81) 아시아경제, "방통위, 가이드라인 전수조사...법제화·폐지 솎아낸다" 2019. 10. 21.
82) 뉴스웨이, 2016. 5. 10. 인터넷 업계, '잊힐 권리' 시행 앞두고 난색

하며 각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적용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83]했고, 카카오 관계자는 “접근배제요청 시스템을 주요 서비스와 연동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므로 6월 시행은 어려우며,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줘야 한다”는 등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및 잊혀질 권리에 대한 시대적 흐름에 기업이 따르지 않을 수 없었기에 기업들도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노력을 시작했다.

특히 이번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기업은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 요구에 대해 응해야 하며, 근본적으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결합을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남용으로 인한 사생활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내역, 제3자 제공내역 등 열람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잊혀질 권리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등으로 인한 명의도용, 사생활 침해 등 피해최소화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주체 확인 및 범위를 확인하고 제한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결정하게 되며 특히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한국인터넷진흥원, KISA)가 대리인이 되어 정보주체의 요청을 사이트 담당자와 개인정보담당자에게 전달해 준다.

---

83) ZD NET KOREA, 인터넷 업계, “'잊힐 권리' 시행 보완 요구 봇물 - 시스템 정비 등 준비 시간 더 필요", 2016.5.10.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식인 답변 역시 질문에서 파생된 내용이므로 작성자 의견을 존중해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지식인의 경우, 질문 작성 후 댓글이 달릴 경우에 삭제를 못한다는 불편 호소가 많았던 만큼 블라인드 처리해서 게시자 의견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

<그림 4>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신청방법 및 절차[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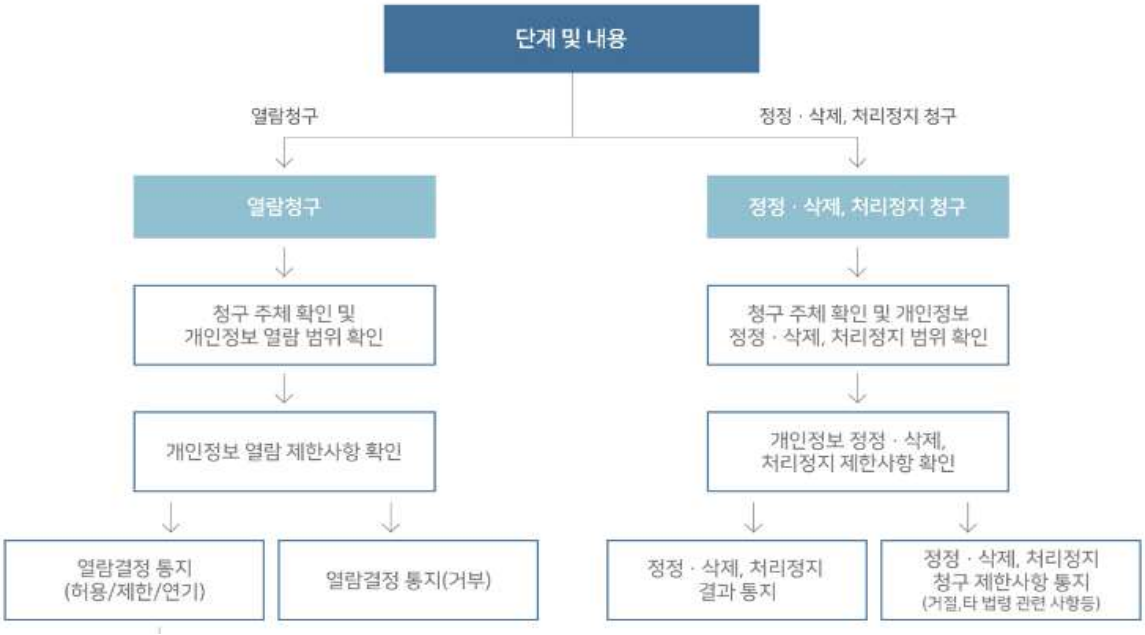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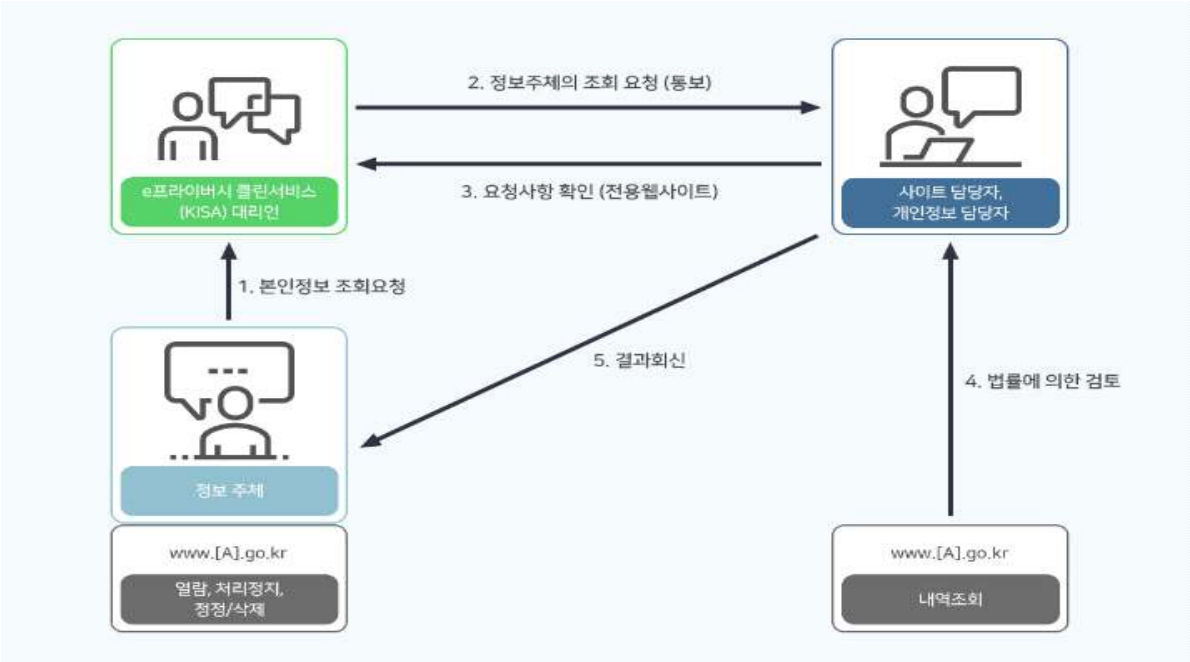

또한 본인확인 내역을 통합 조회하고 원치 않는 경우 회원탈퇴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보주체가 휴대폰 이용 내역 조회를 요청하고 클린센터에서 통신사의 이용내역을 제공받아 웹사이트에 회원탈퇴 요청하는 순으로 처리된다.

8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법령>국민정책>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https://www.pipc.go.kr/np/default/page.do?mCode=D030010000

<그림 5> 본인확인 내역 통합조회 및 회원탈퇴 지원[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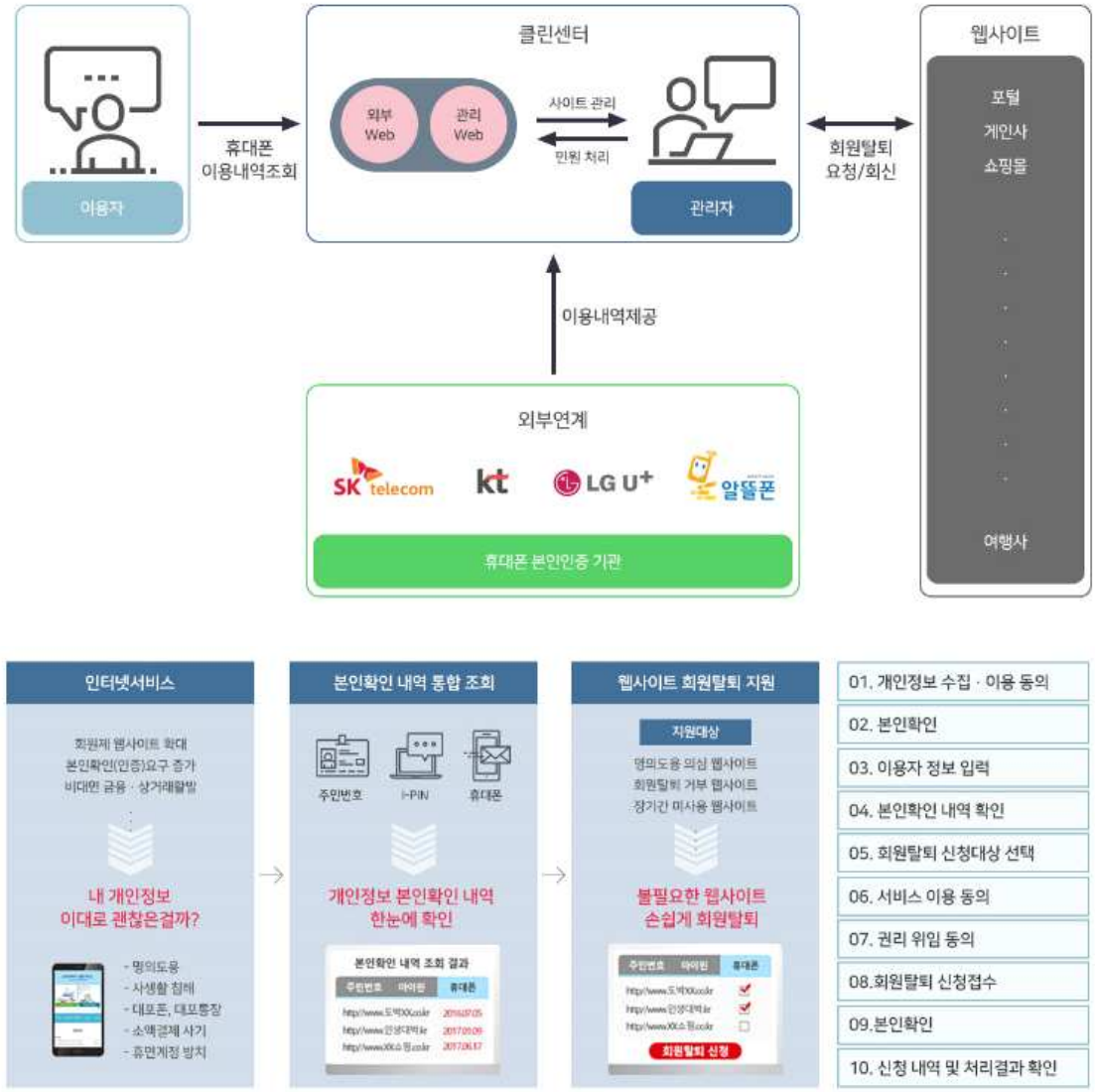

2) 개인정보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결합

가명처리란 “개인정보를 가명정보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것”으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다.

8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법령>국민정책>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http://www.pipc.go.kr/np/default/page.do?mCode=D030010000

<그림 6> 가명처리 절차도 86)

가명처리 절차는 사전 준비단계로 가명처리 계획을 수집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명처리 대상 및 처리 수준”을 정의하기 위한 목적을 규명하고, 가명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의 최소처리원칙을 준수하고 가명처리 방법을 정하기 위해 처리환경, 처리 목적, 정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한다. 이어서, 목적 달성을 위해 가명처리의 적정수준을 가늠하고, 다시 식별될 가능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며, 사후 관리를 위해 적정 처리된 가명정보가 관련법을 준수했는지 적법성을 검토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는 4단계의 절차를 거친다.

<그림 7> 결합 절차도87)

8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법령>국민정책>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http://www.pipc.go.kr/np/default/page.do?mCode=D040010000
8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법령>국민정책>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http://www.pipc.go.kr/np/default/page.do?mCode=D040010000

결합 절차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이 필요”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한다.

3.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민인식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개인정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를 확인하기 위해 범정부 빅데이터 분석도구인 ‘혜안’[88]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잊혀질 권리’, ‘빅데이터’, ‘GDPR’ 등 임의로 선정한 주요개념에 대한 노출빈도(검색빈도)를 확인[89]해 보았다.

분석결과, ‘GDPR시행(2018년)’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20년)’을 거치면서 ‘개인정보’는 검색빈도가 점차 증가(15.8만여 건 → 18.5만여 건 → 35.6만여 건 → 27.1만여 건 ; 월평균 40,417 건)했으며, ‘개인정보유출’ 역시 비록 ‘개인정보’보다 적은 빈도이지만 증가(2.9만여 건 → 2.8만여 건 → 5.7만여 건 →2.4만여 건 ; 월평균 5,719 건)했다. 이는 개인정보에 대한 높아진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전반적인 검색빈도로 보았을 때 높아진 관심이 ‘빅데이터’(월평균 12,344 건) 등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되고, 정작 개인정보유출과 관련이 있는 ‘GDPR’(월평균 1,055 건), ‘잊혀질 권리’(월평균 155 건) 검색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럽에서 유래한 ‘잊혀질 권리’나 ‘GDPR’ 등과 같은 새로운 개념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공감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88) 행정안전부 산하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운영중인 범정부 빅데이터 공통기반 분석 플랫폼으로 정부내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활성화를 위한 분석도구

89) 주요 분석시기는 ① 유럽GDPR이 시행된 2018.5.25.이전 6개월간(2017. 11.25.~2018. 5.24.), ② 이후 6개월간(2018. 5.25.~2018. 11. 24) ③ 그리고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2020.2.4 이전 6개월간(2019. 8. 4.~2020. 2. 3.), ④ 이후 6개월간(2020. 2. 4.~ 8. 3.)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주요분석대상은 혜안에서 선정한 뉴스, 블로거, 트위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개인정보유출”, “잊혀질 권리”, “빅데이터”, “GDPR” 등 임의로 선정한 개인정보 관련 5개 주요단어의 검색빈도, 관련 키워드 등을 측정하였다.

특히 트위터를 중심으로 검색된 다른 키워드와 달리 ‘빅데이터’는 뉴스 사이트를 중심으로 검색이 되어서 언론을 중심으로 공감대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잊혀질 권리’는 검색과 관련된 연관키워드로 분석해보건대 ‘조국 가족’, ‘유시민’, ‘송명빈(잊혀질 권리 국내도입자로 자살변사자)’ 등 주요사건과 관련하여 이슈화된 것으로 보인다.

<표 8> ‘개인정보’, ‘개인정보유출’, ‘잊혀질 권리’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개인정보

개인정보 유출

잊혀질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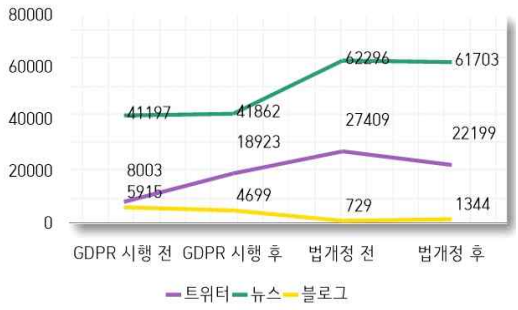

빅데이터

GDPR

※ 트위터는 최신 경향성을 반영한 SNS 역할, 뉴스는 주요 공론장과 같은 역할, 블로거는 트위터 보다 긴 내용의 좀 더 숙성된 경향을 띄는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함[90]

90) 통상 이슈와 정책은 공론화(뉴스) ⇨ 토론 등 상호작용(트위터) ⇨ 정착화(블로거) 등으로 이슈가 정책으로 자율적 순환함을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경향은 2018년 GDPR시행 및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사건[91]으로 정책이해관계자들 간에 개인정보가 이슈화되어 금년 2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하기 위한 추동력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국민들은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와 관련한 부정적 키워드로 '유출', '불법', '처벌', '문제' 등이 나온 것으로 보건데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처벌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그 동력이 잊혀질 권리 등 국제적인 권리로 승화 또는 내면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일러 보인다.

상설하면, '잊혀질 권리'에 대한 검색빈도는 월평균 155건에 불과하여 '개인정보'(월평균 40,417 건) 및 '개인정보유출'(월평균 5,719 건)에 비해 상당히 떨어져 보였으며, 연관 검색어도 '싸이월드 서비스 종료', 'n번방' 등 주요 사회적 이슈와 특정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유출'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GDPR'에 대한 검색은 '적정성 평가' 등 정책적 과제가 소수의 이해관계인 중심으로 검색되어 검색빈도가 많지 않으며, 일반 국민들의 GDPR에 대한 인식수준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GDPR'이나 '잊혀질 권리' 등에 대해 인식 수준이나 공감대는 전반적으로 낮은데, 유럽 등 외부에서 선제적으로 규범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로서 후행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현장으로 추정되며, 보다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반면, '빅데이터'는 공론장인 뉴스사이트에서 검색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데이터 활용을 통한 제4차 산업혁명의 동인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적 추동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

91) 2012~2013년 신용정보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DB)이 신용카드 부정사용방지시스템 개발용역중 KB국민카드(5,378만 건), 롯데카드(2,689만 건), 농협은행(2,259만 건) 등 총1억326만 건의 고객정보 대량유출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 매경, "대법, 개인정보 유출 카드사에 최고액 벌금형 확정" 2020. 9.14.(검색일자 2020. 9.20)

결론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개인정보를 대함에 있어서 권리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 방법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인정보 활용에 보다 더 무게 중심을 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측면과 보호해야 하는 측면으로 구분해보건대 4차산업혁명의 주요소재인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것과 함께 개인정보의 보호측면에서 보다 더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반영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인권관념에 충실한 개인정보보호방법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숙의가 필요해 보인다.

Ⅴ. 정책제언

1.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제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VIGILANTIBUS ET NON DORMIENTIBUS JURA SUBVENIUNT)」라는 법언처럼, 자신의 권리는 타인 찾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찾아야 한다.

보다 광활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상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권리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격권, 사생활보호권 등 어떠한 헌법적 기본권에서 그 근원을 찾던지 간에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를 높이고, 그에 맞는 법 관념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잘된 법과 제도라도 정보주체가 깨어있고 자신의 권리인 개인정보보호를 요청하지 않으면 충분히 보호해 줄 수 없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 관련 검색빈도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은 개인정보보호에 비하여 ‘잊혀질 권리’, ‘GDPR’ 등 새로운 권리관념에 대한 검색빈도수가 적은 것은 낮은 우리 국민의 인식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필자는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도 제고를 위해 이용자, 정보관리자가 스스로 자율적 규제·교육·언론홍보 등 ‘사회적 운동’을 지원하여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견해[92]에 의견을 같이 한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 보호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또는 사회적인 노력에 의해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대부분[93] 확인 없이 동의하는 모바일게임, 쇼핑 사이트의 개인정보 수집·관리·활용 요청 등에 대해 개인정보의 주인으로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꼼꼼히 확인 후 동의해야 하겠다. 또한 권리 주체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업로드하거나 작성할 때는 한번쯤 이러한 정

92) 한국정보화진흥원(KISA) “「잊혀질 권리」 연구반 제6차 회의 결과”, 개인정보보호지원팀, 2014, 12면
93) 이기헌.서의진, “개인정보 수집 제공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조사결과”, 한국소비자보호원 2011년, 25면

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달리 인터넷 상에서 돌아다닐 수 있다는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 상 습관적으로 쿠키·히스토리를 삭제할 수 있는 등 관련 지식을 함양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94].

더 나아가 개인정보가 유통되는 매 시기 · 매 단계 마다 개인정보의 주인으로서 그 결정권을 행사하는데 게으름을 피우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정보의 비대칭성 극복하는 환경 조성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관리자와 정보주체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정보 소외계층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해소를 위해 관련 정부·공공기관 등이 관련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실태조사를 우선 되어야 한다.

정보 관리자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필요한 목적 범위내에서만 수집하며, 관련 내용이 그 목적을 다했을 때 스스로 폐기하는 등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가는 이에 대한 지속적 홍보와 교육을 통해 이용자와 정보관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오·남용의 폐해를 주지시키고, 국민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3. 관련 제도 정비 및 감독기구 운영

정보주체와 정보관리자의 자발적인 노력과 더불어 국가는 개인정보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을 위한 감독기구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 주어야 하겠다.

2012년부터 시작된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에 따라 완성된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은 중복 유사 법령을 일원화하고 재정비함으로써 개인정보 보

94) 고경화, 전게 논문, 153면

호를 위한 기본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감독기구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위원장을 장관급)으로 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국가적 노력의 결실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세계적인 흐름과 산업의 변화를 철저히 분석하고, EU의 GDPR 등 관련국과의 법·규정·지침을 비교하여 더욱 선진적인 법체계를 구현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분석·보완할 하부기구를 내실있게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시 연관 키워드에도 노출된 바 있는 '적정성 평가' 등 국제유통을 위한 표준마련도 조기에 매듭짓는 등 관련 현안도 그 처리에 속도를 내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잊혀질 권리와 관련하여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설서(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로 판단하고 있는데 EU GDPR과 같은 명확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잊혀질 권리의 객체를 본인의 작성물 뿐 아니라 제3자가 작성한 게시물·링크까지 확대하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과거에 비해 현재는 정보주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뿐 아니라 관심사, 위치정보 등 수집·활용되는 개인정보의 종류와 양은 전보다 많아졌고 이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모니터링하고 차단할 프로그램 개발 등 기술적인 노력도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잊혀질 권리의 경우 다음과 같은 보다 더 적극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메모리에 저장하는 정보에 사용자가 설정하는 정보만료일을 담아 만료일에 도달하거나 만료일이 지난 정보를 자동으로 삭제하는 '정보만료일 제도[95]', 인터넷 환경의 특성상 주요 포털 사이트상에서 운영자가 선제적인 검색차단만으로 잊혀질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삭제요구권과 더불어 검색차단 요구권' 도입[96], 앤 카부키안 박사가 1990년대 이미 주장한 설계

95) 고경화, 전게논문 155면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를 배려하면서도 편리성 등을 해치지 않도록 디자인하는 ‘Privacy by Design[97]’, 온라인 광고 회사 등에 의한 인터넷 사용자 행동추적을 거부할 수 있는 ‘온라인 추적 차단(Do Not Track) 제도[98]’ 등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한 제도들이다.

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

지난 2020년 1월 9일 행정안전부는 “2019년 개인정보 관리 잘 하는 공공기관은 어디?” 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진단하는데 2019년에는 중앙부처 46개, 중앙부처 산하기관 339개, 광역지자체 17개 등 전국 7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진단[99]한 결과 양호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중앙부처에서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23개 기관, 중앙부처 산하기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149개 기관, 시·도에서는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등 4개 기관, 시·군·구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59개 기관, 지방공기업은 경상북도개발공사, 중랑구시설관리공단 등 54개 기관으로 총 288곳이며 이는 전국 778개 공공기관 대비 37%에 해당한다.

해당 보도자료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과 접속기록 관리도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해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수행 수준이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되었는데, 전반적인 수치가 상승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490곳은 보통 및 미흡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실태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

96) 박철우, 전게논문 80면
97) 고경화, 전게논문 158면
98) 고경화, 전게논문 159면
99)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개요
▶ (진단대상) 총 778개 기관(중앙 46, 중앙산하기관 339, 광역 17, 기초 226, 지방공기업 150)
▶ (진단내용) 3개 분야(관리체계 구축, 보호대책 수립, 침해대책 수립) 12개 지표
· (관리체계) 조직, 인력, 예산, 교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수행
· (보호대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과정의 보호 조치 수행
· (침해대책)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유·노출방지 및 안전 조치 수행
▶ (진단결과) 양호, 보통, 미흡의 3개 등급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미흡할 때 민간기업에게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하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기관도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할 것이다.

다만 다행인 것은 이러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매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고 공개하고 있다는 점이며,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 실시 및 현장검사 대상자료로 제공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선도할 길을 만들어가야 하는 시점에 와 있고, 우리나라의 발전된 IT기술 못지않게 그 표준규범과 법의식도 세계를 선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내년 6월 열리는 APPA 포럼을 한국에서 개최하고 세계 최대 개인정보감독기구 협의체인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총회(GPA・Global Privacy Assembly)의 글로벌표준 마련 작업에 참여하는 등 국제협의체에서도 더욱 주도적인 역할[100]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바람직하다.

5.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도는 곧 기업의 성과로 연결되기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하나, 한편으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적절히 하지 않으면 엄청난 과태료와 벌금 뿐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 사업을 폐지해야 할 경우에 직면할 수 있다.

기업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뿐 아니라 사업대상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잘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법률이 기업가 및 내부 개인정보 관리자들의 의식 속에서 잘 수용되어 운용되고 있는지 지속 감시해야 한다.

100) 연합뉴스, '글로벌 대기업 개인정보 침해' 외국 정부·기관과 대응 공조, 2020. 2, 17,

다음과 같은 사업자를 위한 EU 집행위원회의 7단계 체크리스트[101]에 대해 기업 스스로 일상적으로 확인하고 체화시켜야 할 것이다.

<표 9> 7단계 체크리스트

1. 수집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수집·처리의 목적과 법적 근거를 검토하였는가?
2. 개인정보 수집 시 고객 및 직원 등 관련된 각 개인에게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였는가?
3. 개인정보를 필요한 경우에만 보유하고 있는가?
4.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보호조치를 수립하였는가?
5. 개인정보 처리활동을 문서화하고 보유하고 있는가?
6. 외부업체에 GDPR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있는가?
7.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보다 안전한 DPO를 지정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영향평가의 필요여부를 확인했는가?

언뜻 보면 매우 당연한 내용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양과 관련 체크리스트 내용의 준수 정도를 감안하면 매순간 매단계마다 이를 검토하고 이행하여 체화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결코 세계적인 기업은 커녕 국내에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며, 특히 규모가 큰 기업이면 더욱 하부 위탁업체 등에 대한 관리까지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구글, 아마존 등 세계적 기업에서 준수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약관을 분석하고 보다 더욱 엄격하고 철저하게 개인정보보호를 함으로써 세계인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신뢰를 기반으로 세계인들과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정서에 맞는 표준을 선도적으로 만들고, 그 표준을 통해 세계와 더욱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01)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게 가이드북, 199-201면

이러한 궁극적 목표에 도달되기 전이라도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개인정보보호 표준 준수 및 사이버 규범을 제시하고 이끌고 나가는 것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영역에서 선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2020년 9월 인터넷진흥원(KISA)에서 15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선정된 기업에 9~11월 3개월 동안 GDPR 이행 조치 방안 제시,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가이드, 역외 개인정보 전송 표준계약 작성 교육 등 종합 대응책을 지원하고 컨설팅[102]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인다.

6. 인간 존엄을 구현하는 개인정보 보호 표준 개발

상술하였듯이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기술을 복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시대를 마무리해야 할 때이다. 그 보다도 인류의 삶을 이끌어갈 새로운 가치와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가치와 기술은 관련 시설과 기술이 집적되어 있는 곳에서 그 정신을 담은 '게임의 룰' 또한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기술이 세계인의 공감을 받을 때 역외적용으로 인한 예기치 않은 피해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결국 각국의 역외적용 사례에서 보듯이 단순히 자국의 외형적인 힘만 앞세워서 상대국가에 대해 역외적용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 보장 등 세계인이 공감하는 본원적 인류가치가 향하는 방향으로 규범력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이미 역외적용 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효과이론, 이익균형이론, 합리성의 원칙 등을 관철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의 이와 유사한 공유가치를 발굴하고, 개인정보보호 제도와 의식 속에 투영시켜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는 인간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 시작은 동의·참여

102) 부산일보, 'KISA, 중고기업에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컨설팅 제공', 2020. 8. 19.

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일선 현장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한다. 이제 정보주체 본인이 동의 아래 작성한 것에서 출발하여 타인이 작성한 자기의 개인정보로 확대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경계 없는 사이버공간에서 인간 존엄성이 존중되는 새로운 사회적 인간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기술개발에 있어서도 항상 인류의 목적과 인간존엄이라는 본원적 가치를 염두에 두고 철학적인 고민을 담을 때, 후행하는 국가도 공감하고 우리가 제시하는 규범으로의 길에 동행하리라 생각한다.

7. 성과중심주의적 현장 증거수집 행태의 개선 검토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비슷한 시기에 높아진 국민의 인권의식을 담은 국민 중심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발 맞춰서 경·검 등 법집행기관들도 기존의 범인 검거 등 성과주의 패러다임 안에서 개인정보를 단순 부속품(압수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인간 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는 최소단위라는 인식을 새로이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을 재검토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특히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함에 있어서 목적에 비추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되도록 현장 제도개혁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도 시작해 봄 직하다.

Ⅵ. 맺음말

모쪼록 인류의 역사는 문자를 이용한 기록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인터넷혁명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과 전 지구적 네트워크로 인간은 망각을 잊고 영원히 기억하고자 하는 기본적 욕구이자 소망은 실현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확산된 기술로 기억이 일반화 되어가고 망각하는 방법을 망각하게 됨에 따라 디지털화된 기계적인 방식에 피로감을 느낀 인간에게 새롭게 생긴 소망이 ‘잊혀질 권리’로 생각된다.

현 단계에서 ’잊혀질 권리’는 정보의 생성, 저장, 유통의 과정에서 개인의 자기 결정권 보장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유통기한을 정하고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매우 빠르게 진화하는 사이버공간에서 ‘잊혀질 권리’를 기존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삭제권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 즉 ‘인간의 존엄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새로운 형태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 구체적인 데이터 주권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진화하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서 EU와 미국의 상호간 입장차를 정확히 이해한 후 GDPR 중심의 국제표준과 우리 법제·현실간의 간극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한가운데에서,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EU의 ’잊혀질 권리’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인 양자의 이익형량을 통해 상호 수렴할 수 있는 실체적 절차적 가능성도 참고해 봄 직하다.

우리나라는 법익침해를 전제로 삭제·정정·처리중지 등과 같이 ’잊혀질 권리’와 유사한 조항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나라간 경계없이 확장되

고 유통되는 정보의 속성을 감안하여 유럽・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내용과 맥락을 정확히 분석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관련 주체(정보주체, 개인정보관리자, 개인정보처리자 등), 대상정보(개인저술, 표현의 자유대상인 기사 등), 처리절차(임시조치, 삭제, 정정, 처리중지 등), 기술적인 가능성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이익형량이 필요하고, 자칫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주체간의 역할 방기로 인해 그 피해가 사업자와 사회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사나 소송 등을 위한 증거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역사적 통계적으로 필요한 경우, 알권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삭제 예외 사유로 적시하고 있는 사항도 개인정보제도의 근본목적이 잘 투영이 될 수 있도록 적절히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은 포털 사이트 뿐 아니라 단말기회사 및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GDPR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술적 조치 및 법적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국가 등 이해관계자들간 조정을 통해 합리적 수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다만 무조건적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요구는 기업활동을 제약하여 새로운 사업을 막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수행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면밀히 살펴 적절히 관리해야 하는 등 산업발전과 국민의식 등 제반 상황을 사전에 충분하고 입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다른 정보주체의 기본권 등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발생하는 타인의 침해되는 법익에 대한 이익을 형량하고 법익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개별 정보주체가 스스로 본인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조정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을 설정할 수 있는 윤리의식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논문>

개인정보보보호위원회,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2016. 12월,

고경화, “잊혀질 권리에 관한 공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5. 8월

구본권, “나에 관한 기억을 지우라”, 풀빛, 2016년

김대식, “신경과학의 이해, - 뇌, 현실, 기계, 지능 -”, 열린연단 : 문화의 안과 밖, 네이버, 2014년. (http://tvcast.naver.com/v/172276)

문재완, “잊혀질 권리 : 이상과 실현”, 집문당, 2016년

박노형 외 8인, “EU 개인정보보호법 -GDPR을 중심으로-”, 박영사, 2017년.

박철우, “인터넷상 지속적으로 검색되는 문제의 헌법적 해결: 잊혀질 권리의 도출과 내용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형옥, “사법재판소, 잊혀질 권리는 EU 역외에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 저작권 동향 2019년 22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실효적 규제방안 연구”, 2015.12월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2016년 4월

법무법인 인, 디지털 소멸(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 2016. 12월

빅토마이어 쇤베르그(구본권 옮김), “잊혀질 권리”, 지식의 날개, 2011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유럽사법재판소(ECJ), 온라인상 ‘잊혀질 권리’ 판결”, Internet & security biweekly 제2권, 2014년

원재천, “자국법의 역외적용과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법무부 국제형사과 연구용역과제”, 2011년,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윤종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관”, 정보법학, 제13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 2011년

윤종수·김윤희, “‘잊혀질 권리’에 관한 소고 - 최근 유럽 최고법원의 판결과 그 파급”, 법무법인 세종, 2014년

이기헌·서의진, “개인정보 수집 제공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조사결과”, 한국소비자보호원 2011년

이상돈, “국제거래법”, 중앙대학교출판부, 1992년

장준영 등 5인, “행정규제 위반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확보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7.11월

전병헌, 한국의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한 정책제언 자료집, 2015년 국정감사 정책제언 자료집, 2015. 10. 6.

전은정·염홍열, “잊혀질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EU법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논총. 제22권 제3호,

조소영, “잊혀질 권리 : 정보의 웰다잉을 위한 법리 검토”, 한국공법학회 제41집 제2호, 2012년

최경진, “소위 ‘잊혀질 권리’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의 유럽 법제상 의미”, 오픈넷포럼, 2014년

최승필, “법의 지도”, 헤어북스, 2017년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잊혀질 권리’의 국내 제도 도입 반영 방안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EDPB(유럽 개인정보보호이사회)의 검색엔진 관련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내용 분석”, 2020. 7월 2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유럽사법재판소(ECJ), 온라인상 ‘잊혀질 권리’ 판결”, Internet & security biweekly 제2권, 2014,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GDPR 시행으로 규제 불확실성 직면한 애드테크, 2019년 12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EU간 GDPR 이슈 검토, 2019년 2월 2주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법제동향 제41호, Feb. 2011

한국정보화진흥원(KISA), “「잊혀질 권리」 연구반 제6차 회의 결과”, 개인정보보호지원팀, 2014년

함인선, “EU 개인정보보호법”, 모래미, 2016년

함인선, “EU 정보보호규정법제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우리기업을 위한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북” 개정판, 2017년

<언론기사>

20minutes.fr, 13 octobre 2010,

European Journalism Centre 2011. 1.13,

ZD NET KOREA, 인터넷 업계, “’잊힐 권리’ 시행 보완 요구 봇물 - 시스템 정비 등 준비 시간 더 필요”, 2016. 5.10.

뉴스웨이, 인터넷 업계, ‘잊힐 권리’ 시행 앞두고 난색, 2016. 5. 10.

동아일보, 文대통령 “개인정보보호,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 2020. 8. 7.

매경, 대법, 개인정보 유출 카드사에 최고액 벌금형 확정, 2020. 9.14.

부산일보, KISA, 중고기업에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컨설팅 제공’, 2020. 8. 19.

아시아경제, “방통위, 가이드라인 전수조사...법제화·폐지 솎아낸다” 2019. 10.21.

아주경제, “이탈리아, 개인정보 보호 위반 구글에 100만 유로 벌금”, 2014. 4. 4.

연합뉴스, ’글로벌 대기업 개인정보 침해’ 외국 정부·기관과 대응 공조, 2020. 2.17.

오마이뉴스, 문 대통령 “데이터 활용-개인정보 보호는 동전의 앞뒷면“, 2020. 8. 7.

<판례>

헌재 2003. 06. 26. 2002헌가14

헌재 2005. 05. 26. 99헌마513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빅데이터 분석]

1. 총괄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람들의 인식수준을 알기 위해서 빅데이터분석 툴인 “혜안[103]” 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개인정보유출’, ‘잊혀질 권리’, ‘빅데이터’, ‘GDPR’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 5개를 임의로 선정하여 주요 시점을 전후 1년간 노출 빈도 및 노출단어의 경향을 분석했다.

주요분석시기는 ① 유럽GDPR이 시행된 2018.5.25.이전 6개월간(2017. 11.25.~2018. 5.24.), ② 시행이후 6개월간(2018. 5.25.~2018. 11. 24) ③ 그리고,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2020.2.4 이전 6개월간(2019. 8. 4.~2020. 2. 3.), ④ 개정이후 6개월간(2020. 2. 4.~ 8. 3.)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주요분석대상은 혜안에서 선정한 뉴스, 블로거, 트위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개인정보유출”, “잊혀질 권리”, “빅데이터”, “GDPR” 등 임의로 선정한 개인정보 관련 5개 주요단어의 검색빈도, 관련 키워드 등을 측정하였다.

뉴스는 주요 공론장과 같은 역할을 하며, 트위터는 최신 경향성을 띈 SNS 역할을 하며, 블로거는 보다 긴 내용의 보다 숙성된 의견을 게재하는 경향을 띄는 것으로 상정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 표와 같으며, ‘개인정보’, ‘개인정보유출’, ‘빅데이터’는 검색빈도가 1만여 건 상회하여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중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유출’은 트위터를 중심으로 검색되었으며, ‘빅데이터’는 뉴스사이트에서 중심으로 검색된 것으로 보아 공론화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여진다. GDPR은 시행이후에 뉴스

103) 혜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운영중인 범정부 빅데이터 공통기반 분석 플랫폼으로, 공공.민간의 데이터를 연계.수집.저장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공유.활용하는 범정부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임. 민간데이터는 뉴스.네이버 블로거.트위터를 대상으로 수집”함

사이트를 중심으로 국내 이슈화가 되었으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전에 국회 논의단계에서 트위터를 중심으로 이슈화가 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는 전반적으로 GDPR시행시와 비교하여 법 개정시에 검색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아 GDPR 및 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GDPR시행 이전에 비해 이후에 검색빈도수가 증가했으며, 법 개정 이전에 비해 이후에는 오히려 검색건수가 감소했으나, 그 관심은 뉴스 나 블로거 사이트로 이어져 해당 노출빈도는 증가했다.

'개인정보유출'은 법 개정전에 검색빈도가 증가했다가 환원되었으며, 법 개정이후에는 트위터보다는 뉴스에서 검색빈도가 증가했다. 개인정보유출 관련 대규모 사건발생시 증가했다가 법 개정 및 추가개정 등 공론화시 뉴스 사이트 등을 통해서 공론화가 시도된 것으로 추정된다.

'잊혀질 권리'는 전반적으로 검색빈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국민들사이에 정확한 인식이 정립되었는지 의심스럽다. 다만 송명빈 자살사건, n번방 사건 등 주요사건 발생시에 같이 연계되어 검색빈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빅데이터'는 GDPR 시행시에 비해 법 시행시에 검색빈도가 증가했으며, 4차산업의 주요산업으로 관심을 받아서 그런지 공론장인 뉴스 검색빈도가 증가했으며, GDPR과 법 개정시행 이전이 이후보다 블로거 검색빈도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GDPR'은 유럽에서 GDPR 시행 이후 국내에서 관심이 증가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에 트위터를 중심으로 검색빈도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1> 주요키워드와 검색빈도 총괄

키워드 \ 검색빈도		검색빈도				연관 키워드
		전체	트위터	뉴스	블로거	
개인정보	GDPR시행前	158,392	118,022	33,898	6,742	아르바이트생, 스마트폰, KISA, 행안부 등
	GDPR시행後	184,709	137,350	42,058	5,301	방통위, 보호실태, 수집 과정, 행안부, GDPR 등
	법 개정 前	355,713	293,131	61,991	583	취급자, 법 적용대상, 연예인, 처리자, 경찰서 등
	법 개정 後	271,204	202,492	67,022	1,690	보호위원회, 대기업, 원천징수, 제3자제공, KISA 등
개인정보 유 출	GDPR시행前	28,890	19,070	9,021	799	정용화, 오보정정, 과징금, 이용자, 가상화폐거래소 등
	GDPR시행後	27,705	20,558	6,659	488	남자새끼들, 불법촬영물, 방통위, 과태료 등
	법 개정 前	56,556	48,629	7,853	74	채권채무 성적, 조국수석 동생, 해명해, 방통위 등
	법 개정 後	24,106	14,554	9,372	180	선생님, 행정부, 수신동의, 과징금, 확진자 등
잊혀질 권 리	GDPR시행前	551	299	160	92	개인정보, GDPR, 유럽연합, 구글, 블록체인 등
	GDPR시행後	970	760	168	42	유시민, 노무현 재단, 혜경궁, 노짱, 개인정보 등
	법 개정 前	1,392	1,309	78	5	OKSensei, 조국 가족, 개인정보, 온라인 등
	법 개정 後	808	653	147	8	남준이, 미니홈피 다이어리, n번방, 박사방 등
빅데이터	GDPR시행前	55,115	8,003	41,197	5,915	요정도, 정영진, 인공지능, 행안부, AI 등
	GDPR시행後	65,484	18,923	41,862	4,699	남북정상회담, 김정선 사무관, 인공지능 등
	법 개정 前	90,434	27,409	62,296	729	JINZZAZZANG, 호캉스, 인공지능, KT 등
	법 개정 後	85,246	22,199	61,703	1,344	일반화, 한남, 양정철, 금융회사, 가명정보 등
GDPR	GDPR시행前	3,304	1,700	1,446	158	EU, 개인정보, 과징금, KISA, 기업들, Data 등
	GDPR시행後	8,557	3,867	4,529	161	EU, 개인정보, 과징금, 기업들, 구글 등
	법 개정 前	12,042	10,806	1,223	13	개인정보보호법, ,EU 과징금, 적정성 결정 등
	법 개정 後	1,428	653	758	17	EU, 페북, 유럽인, 개인정보, 적정성 결정 등

2. 개인정보

유럽GDPR시행 전에 '개인정보'로 검색된 빈도수는 전체 158,392건(트위터 11.8천여 건, 뉴스 3.4만 건, 블로거 0.6만여 건)으로 트위터 중심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관련 키워드는 '아르바이트생', '스마트폰', 'KISA' 등이 연관어로 검색되었으며, 주요 공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뉴스에서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중요성', 'GDPR', '빅데이터' 등과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2> GDPR시행 이전 개인정보 검색빈도 및 연관어

검색빈도 수	주요 관련 키워드(전체)	주요 관련 키워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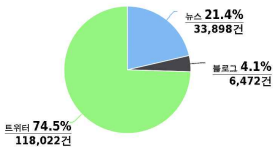		

<표 13> GDPR 시행이전 '개인정보' 연관검색어 경향 분석

긍정키워드	
부정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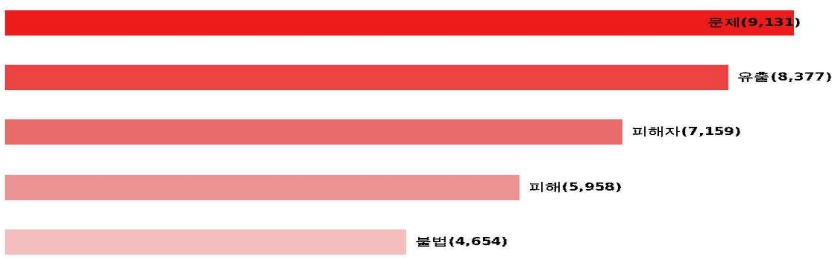

유럽 GDPR시행 이후에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전체 184,709건(트위터 13.7만여 건, 뉴스 4.2만여 건, 블로거 0.5만여 건)으로 트위터와 뉴스상에서 관심은 증가한데 반해 블로거에서 관심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연관 키워드는 ‘방통위’, ‘보호실태’, ‘수집과정’ 등이며, 그중 뉴스에서는 ‘행정안전부’, ‘사업자’, ‘GDPR’ 등이다.

<표 14> GDPR시행 이후 '개인정보' 검색빈도 및 연관어

검색빈도 수	주요 관련 키워드(전체)	주요 관련 키워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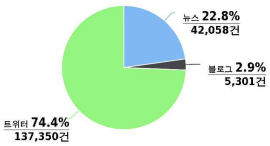		

<표 15> GDPR 시행이후 '개인정보' 연관검색어 경향 분석

긍정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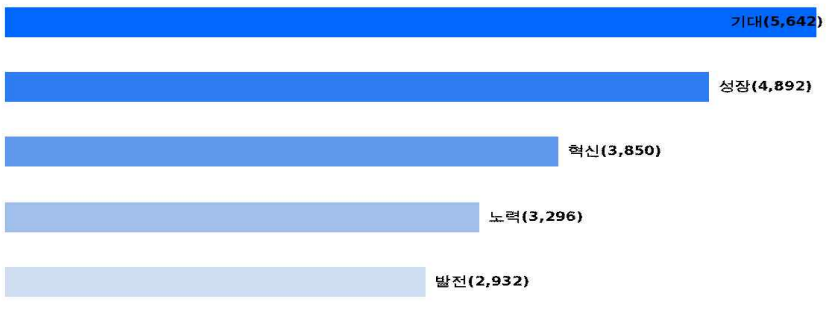
부정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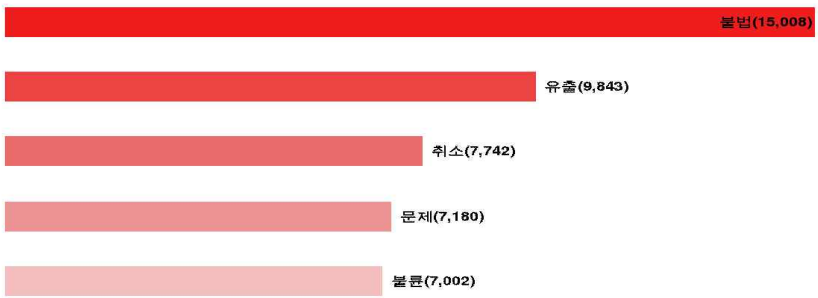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 전에는 ‘개인정보’ 관련 검색빈도 전체 355,713건(트위터 29.3만 건, 뉴스 6.2만 건, 블로거 583건)이다. ‘개인정보’와 같이 검색되는 키워드는 ‘취급자’, ‘법 적용대상’, ‘연예인’, ‘처리자’, ‘경찰서’ 등 일부 사건관련 사항을 제외하면 법안 관련 내용이며, 공론장인 뉴스에서는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과징금’ 등 법과 관련된 내용이 검색되었다.

<표 16> 국내법 개정시행 이후 '개인정보' 검색빈도 및 연관어

검색빈도 수	주요 관련 키워드(전체)	주요 관련 키워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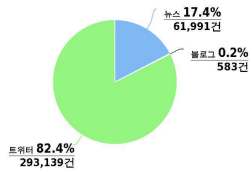		

<표 17> 국내법 개정시행이후 '개인정보' 연관검색어 경향 분석

긍정키워드	
부정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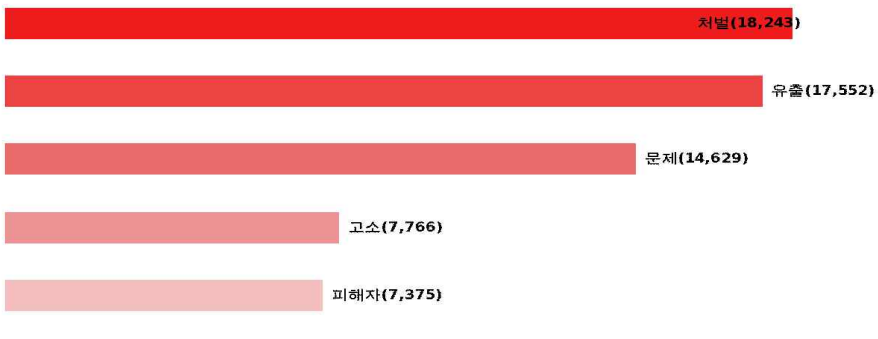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 후에는 ‘개인정보’가 검색된 빈도는 전체 271,204건(트위터 20.2만여 건, 뉴스 6.7만여 건, 블로거 0.16만여 건)으로 확인되었다. ‘개인정보’와 같이 검색되는 키워드는 ‘보호위원회’, ‘대기업’, ‘원천징수’, ‘민간분야’ 등 이며, 뉴스에서는 ‘제3자 제공’, ‘행정안전부’, ‘보호위원회’, ‘이용현황 서비스’ 등 법안 개정내용 중심으로 검색되었다.

<표 18> 국내법 개정시행 이전 '개인정보' 검색빈도 및 연관어

검색빈도 수	주요 관련 키워드(전체)	주요 관련 키워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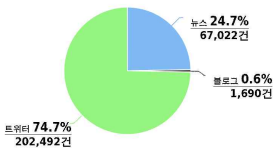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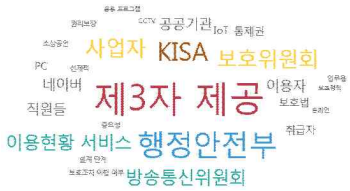

<표 19> 국내법 개정시행이전 '개인정보' 연관검색어 경향 분석

긍정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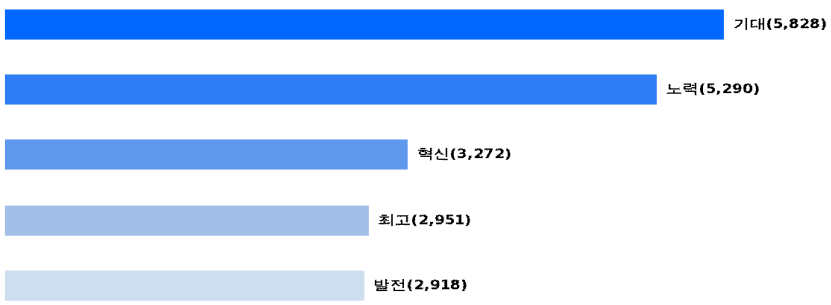
부정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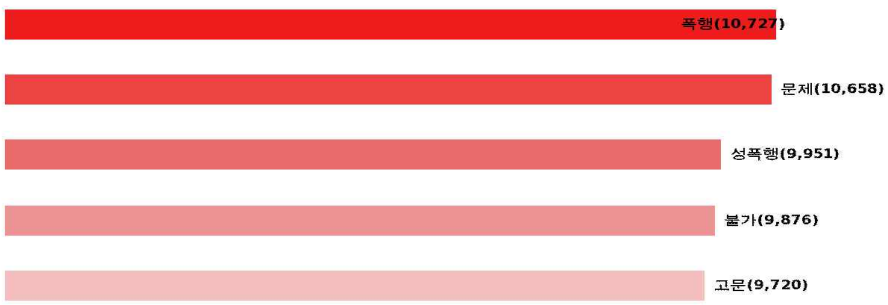

3. 개인정보유출

GDPR시행 이전 ‘개인정보유출’ 검색빈도는 전체 28,890건으로 전체적으로 많지 않은 수준이다. ‘개인정보유출’과 연관검색어로는 전체적으로는 ‘정용화’, ‘오보정정’ 등 특정 사건에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경위 및 적극 대응을 촉구하려는 키워드가 보이며, 그중 뉴스는 ‘이용자’, ‘과징금’,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개인정보유출로 처벌 및 악용사례 등으로 추정된다.

<표 20> GDPR시행 이전 '개인정보유출' 검색빈도 및 연관어

검색빈도 수	주요 관련 키워드(전체)	주요 관련 키워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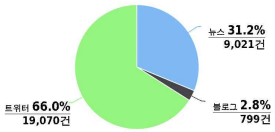		

<표 21> GDPR 시행이전 '개인정보유출' 연관검색어 경향 분석

긍정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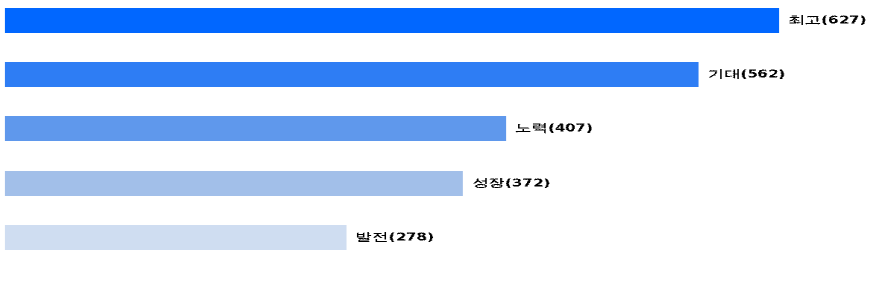
부정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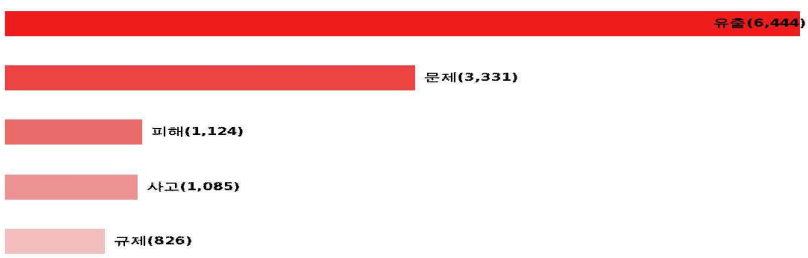

GDPR시행 이후 ‘개인정보유출’ 검색빈도는 전체 27,705건(트위터 2만여 건, 뉴스 0.7만여 건 등)으로 시행전과 별반 차이가 없어 GDPR 시행과의 상관관계는 없어 보인다. ‘개인정보유출’과 연관검색되는 단어는 ‘남자새끼들’, ‘불법촬영물’ 등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젠더이슈와 연계된 검색어가 많이 등장한다. 그중 뉴스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과징금’, ‘전화번호’ 등이 소관부서 및 GDPR 관련사항이 검색되어 언론은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22> GDPR시행 이후 '개인정보유출' 검색빈도 및 연관어

검색빈도 수	주요 관련 키워드(전체)	주요 관련 키워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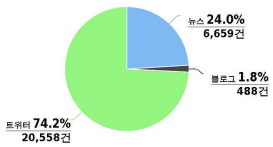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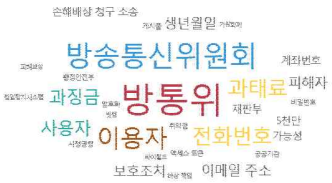

<표 23> GDPR 시행이후 '개인정보유출' 연관검색어 경향 분석

긍정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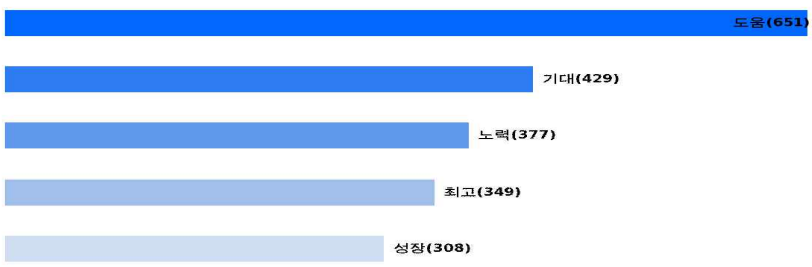
부정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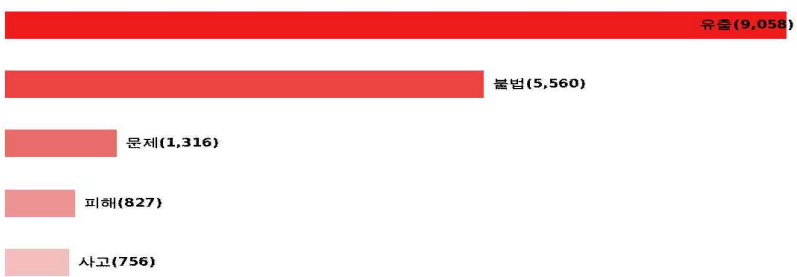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 이전 ‘개인정보유출’ 단어 검색빈도는 전체 56,556건(트위터 4.9만여 건, 뉴스 0.79만여 건 등)이다. 연관검색어는 ‘채권채무 성적’, ‘조국수석 동생’, ‘해명해’ 등 주요사건 관련 검색어로 보이며, 뉴스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플러스’, ‘포인트 탈취’ 등 주요사건과 함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처벌이 함께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24> 국내법 개정시행 이전 '개인정보유출' 검색빈도 및 연관어

검색빈도 수	주요 관련 키워드(전체)	주요 관련 키워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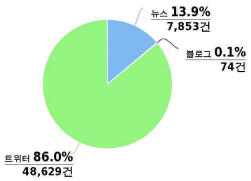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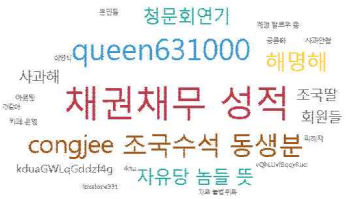	

<표 25> 국내법 시행이전 '개인정보유출' 연관검색어 경향 분석

긍정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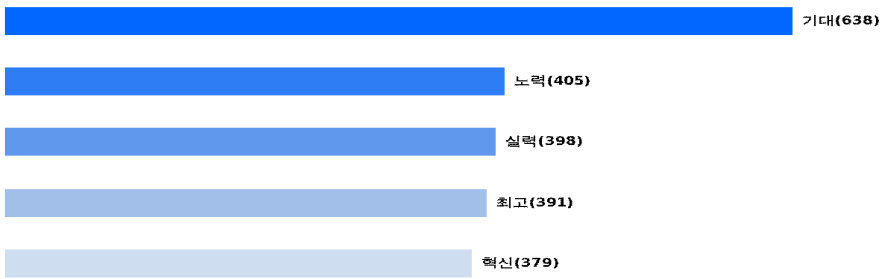
부정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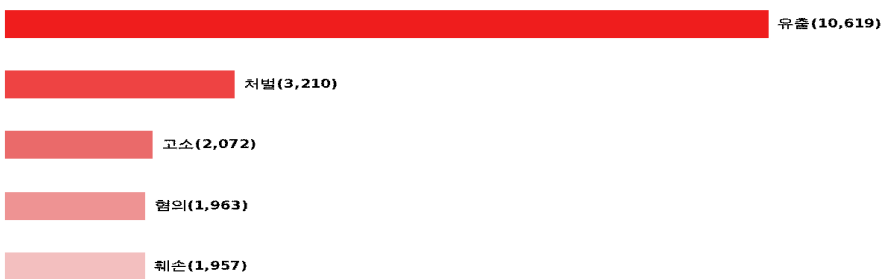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 이후 ‘개인정보유출’ 단어 검색빈도는 전체 24,106건(트위터 1.4만여 건, 뉴스 0.9만 건)으로 법 시행 전에 비해서 검색빈도가 줄었다. 연관검색어는 ‘선생님’, ‘행정부’, ‘수신동의’, ‘고객센터’ 등이며, 그중 뉴스 검색어로는 ‘과징금’, ‘확진자’, ‘비밀번호’, ‘암호화’ 등 법 개정내용과 현안인 코로나가 연계된 검색어가 보인다.

<표 26> 국내법 개정시행 이후 '개인정보유출' 검색빈도 및 연관어

검색빈도 수	주요 관련 키워드(전체)	주요 관련 키워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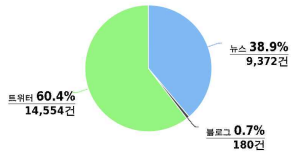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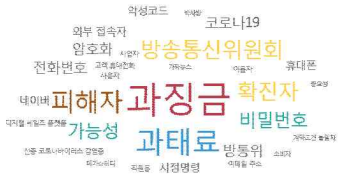

<표 27> 국내법 개정시행 이후 '개인정보유출' 연관검색어 경향 분석

긍정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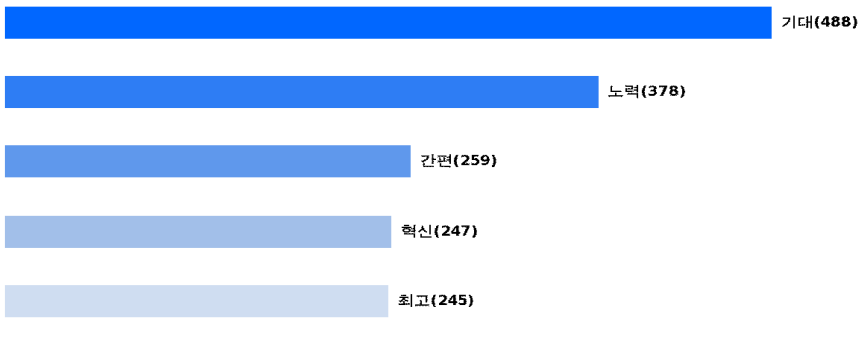
부정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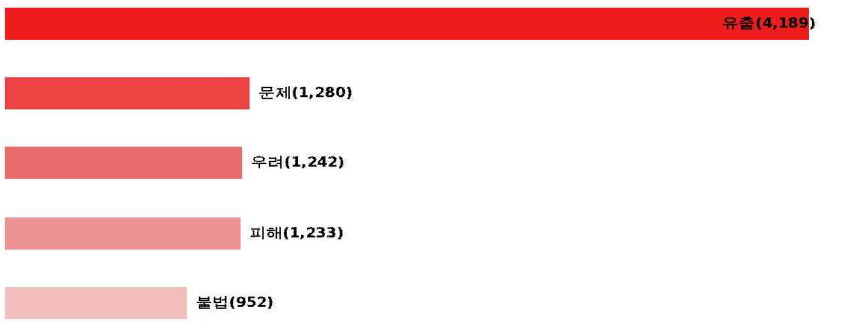

4. 잊혀질 권리

GDPR시행 이전 ‘잊혀질 권리’ 검색빈도는 전체 551건(트위터 299, 뉴스 160 등)으로 전반적으로 GDPR와 잊혀질 권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관검색어에서는 ‘개인정보’, ‘GDPR법’, ‘구글’, ‘블럭체인’ 등 전반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검색된 것으로 보인다.

<표 28> GDPR시행 이전 '잊혀질 권리' 검색빈도 및 연관어

검색빈도 수	주요 관련 키워드(전체)	주요 관련 키워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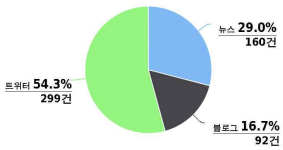		

<표 29> GDPR 시행이전 '잊혀질 권리' 연관검색어 경향 분석

긍정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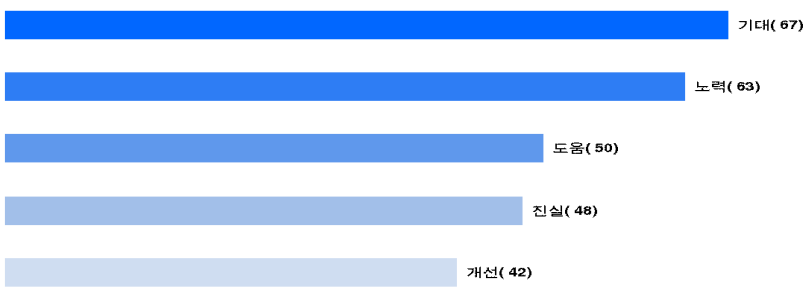
부정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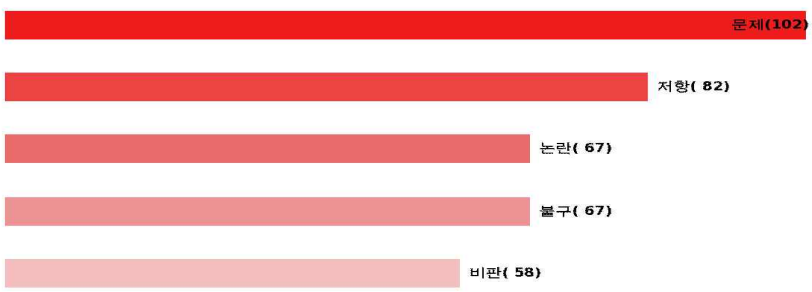

GDPR시행 이후 ‘잊혀질 권리’ 검색빈도는 전체 970건(트위터 760, 뉴스 168 등)으로 전반적으로 검색빈도가 높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증가했으며, 연관검색어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소속’, ‘혜경궁’, ‘노짱’ 등 특정인에 대한 사건을 중심으로 쟁점이 되어 검색이 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중 뉴스에서는 ‘개인정보’, ‘GDPR’, ‘정보주체’ 등 GDPR관련어가 검색된다.

<표 30> GDPR시행 이후 '잊혀질 권리' 검색빈도 및 연관어

검색빈도 수	주요 관련 키워드(전체)	주요 관련 키워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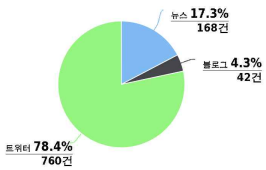		

<표 31> GDPR 시행이후 '잊혀질 권리' 연관검색어 경향 분석

긍정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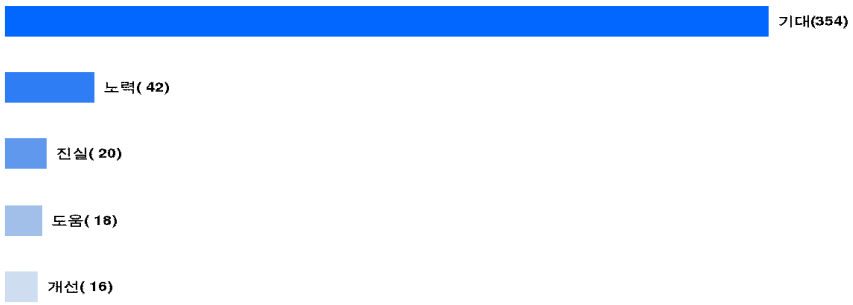
부정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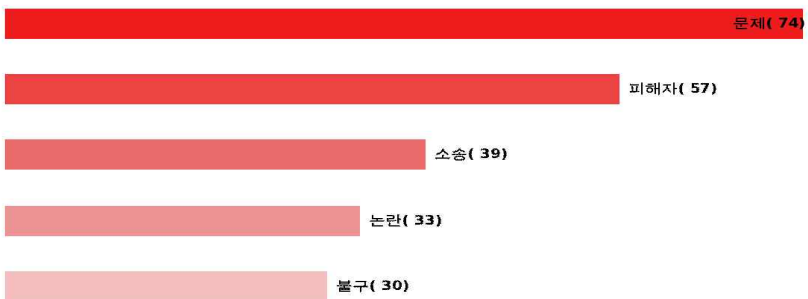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 이전 ‘잊혀질 권리’ 단어 검색빈도는 전체 1,392건(트위터 1,309, 뉴스 78)으로 많지 않았으며, 연관 검색어로는 ‘OKSensei’, ‘조국 가족’ 등 주요사건과 함께 ‘개인정보’에 관련된 내용이 검색되기도 했다. 이는 빈도가 많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착시현상으로 보인다.

<표 32> 국내법 개정시행 이전 '잊혀질 권리' 검색빈도 및 연관어

검색빈도 수	주요 관련 키워드(전체)	주요 관련 키워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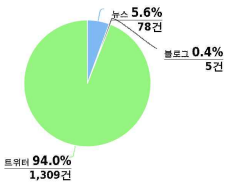		

<표 33> 국내법 개정시행 이전 '잊혀질 권리' 연관검색어 경향 분석

긍정키워드	
부정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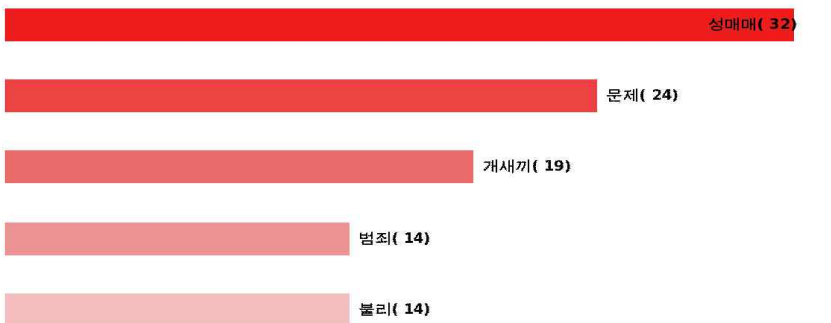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 이후 ‘잊혀질 권리’ 단어 검색빈도는 전체 808건(트위터 653, 뉴스 147 등)으로 많지 않으며, 연관검색어도 ‘남준이’, ‘미니홈피 다이어리’, ‘완전 서비스 종료’, ‘피해자’, ‘박사방’ ‘n번방’ 등 싸이월드 서비스 종료와 관련되거나 특정사건(n번방 사건)과 관련 검색어가 눈에 띈다.

<표 34> 국내법 개정시행 이후 '잊혀질 권리' 검색빈도 및 연관어

검색빈도 수	주요 관련 키워드(전체)	주요 관련 키워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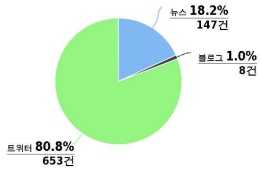		

<표 35> 국내법 개정시행 이후 '잊혀질 권리' 연관검색어 경향 분석

긍정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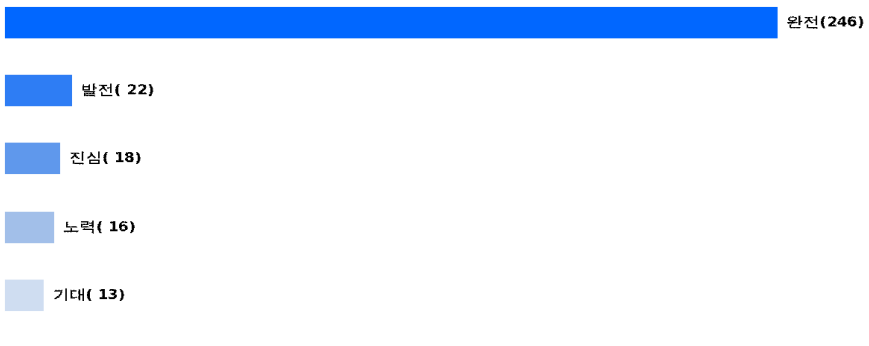
부정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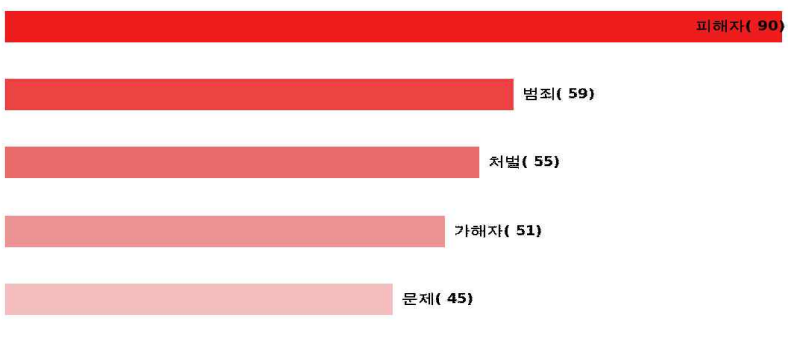

5. 빅데이터

GDPR시행 이전 ‘빅데이터’ 검색빈도는 전체 55,115건(뉴스 4.1만 건, 트위터 0.8만 건, 블로거 0.6만 건)이다. 이전 주요 키워드와 달리 공론장인 뉴스 검색빈도가 74.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연관검색어로는 전체적으로는 ‘요정도’, ‘전문가’, ‘정영진’ 등이며, 뉴스에서는 ‘인공지능’, ‘행정안전부’, ‘지자체’, ‘4차 산업혁명 시대’ 등 주요 정책적 이슈와 연계 검색된 것으로 보인다.

<표 36> GDPR시행 이전 '빅데이터' 검색빈도 및 연관어

검색빈도 수	주요 관련 키워드(전체)	주요 관련 키워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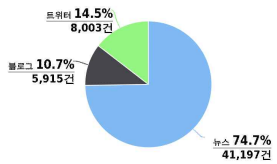		

<표 37> GDPR 시행이전 '빅데이터' 연관검색어 경향 분석

긍정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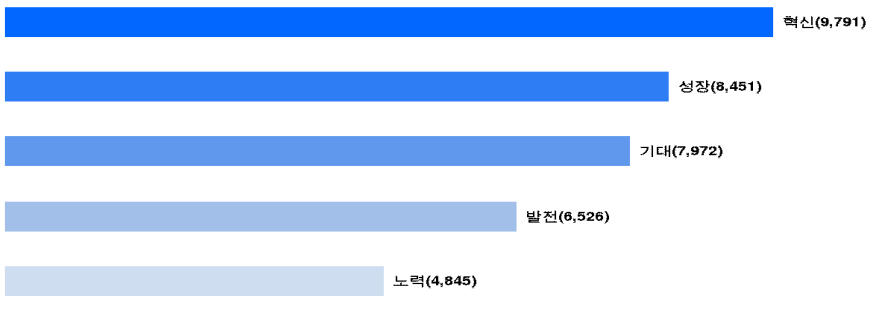
부정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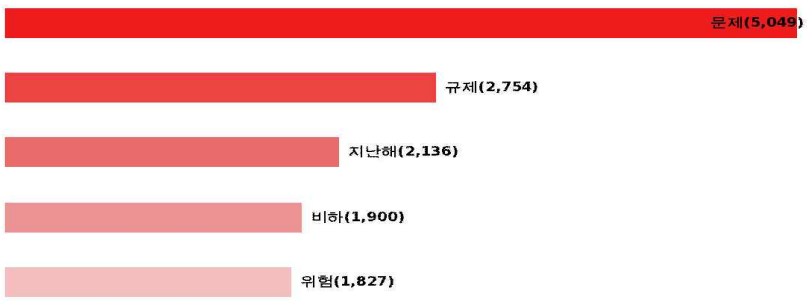

GDPR시행 이후 ‘빅데이터’ 검색빈도는 전체 65,484건(뉴스 4.2만여 건, 트위터 1.9만여 건, 블로거 0.5만 건)으로 GDPR 시행이후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연관검색어는 ‘남북정상회담’, ‘김정선 사무관(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 관련 인터넷 방송)’ 등이며, 그중 뉴스에서는 ‘인공지능’, ‘지자체’, ‘AI’ 등 경제적 관점에서 검색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38> GDPR시행 이후 '빅데이터' 검색빈도 및 연관어

검색빈도 수	주요 관련 키워드(전체)	주요 관련 키워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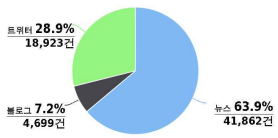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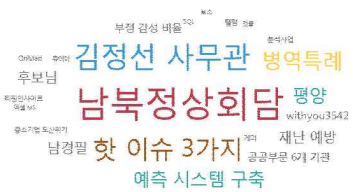	

<표 39> GDPR 시행이후 '빅데이터' 연관검색어 경향 분석

긍정키워드	
부정키워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 이전 ‘빅데이터’ 단어 검색빈도는 전체 90,434건(뉴스 6.2만 건, 트위터 2.7만 건 등)이다. 연관검색어로는 ‘진짜짱’, ‘호캉스’, ‘호텔 서치’, ‘빅브라더’ 등이며, 그중 뉴스에서는 ‘인공지능’, ‘과기정통부’, ‘지자체’, ‘진주시’, ‘KT’, ‘데이터 생태계 조성’ 등이다.

<표 40> 국내법 개정시행 이전 '빅데이터' 검색빈도 및 연관어

검색빈도 수	주요 관련 키워드(전체)	주요 관련 키워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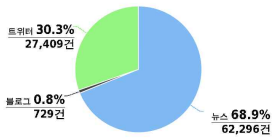		

<표 41> 국내법 개정시행 이전 '빅데이터' 연관검색어 경향 분석

긍정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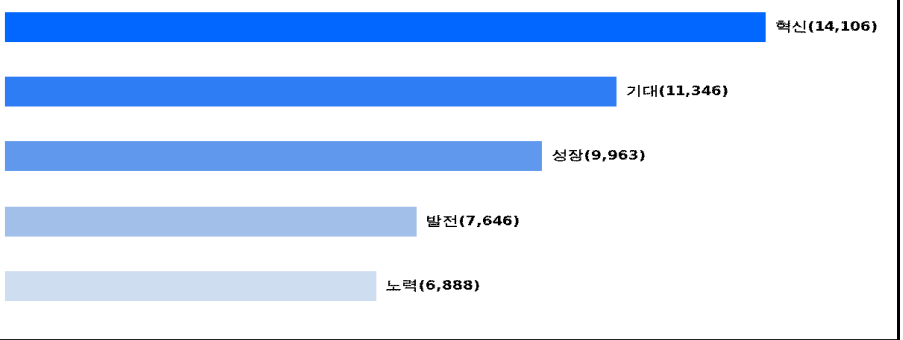
부정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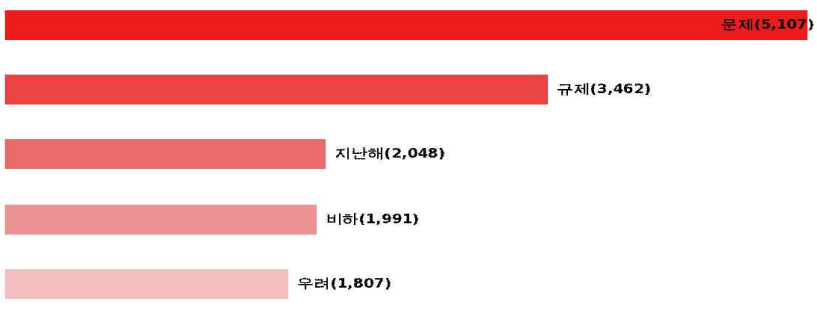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 이후 ‘빅데이터’ 단어 검색빈도는 전체 85,246건(뉴스 6.2만여 건, 트위터 2.2만여 건, 블로거 0.1만 건)이다. 연관검색어로는 ‘일반화’, ‘한남’, ‘양정철(민주당의원)’ 젠더문제와 및 국회의원 선거와 연관되어 검색어가 발견된다. 뉴스에서는 ‘금융회사’, ‘금융위원회’, ‘가명정보’, ‘AI’, ‘통계청’,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보호법 내용과 관련된 검색어가 눈에 띈다.

<표 42> 국내법 개정시행 이후 '빅데이터' 검색빈도 및 연관어

검색빈도 수	주요 관련 키워드(전체)	주요 관련 키워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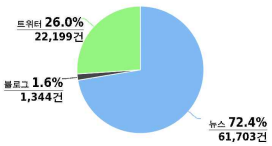		

<표 43> 국내법 개정시행이후 '빅데이터' 연관검색어 경향 분석

긍정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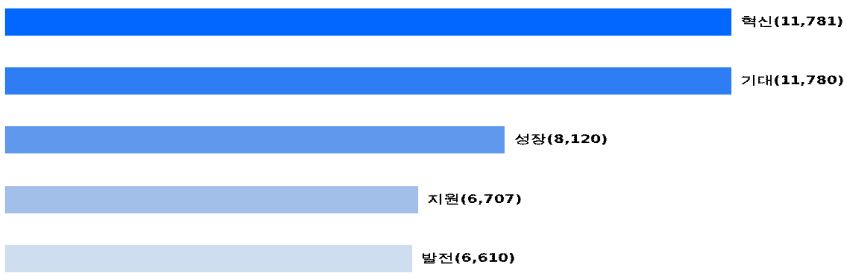
부정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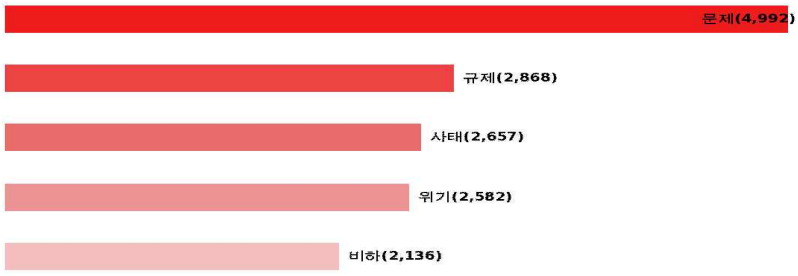

6. GDPR

GDPR시행 이전 'GDPR' 검색빈도는 전체 3,304건(트위터 1,700, 뉴스 1,446, 블로거 158)으로 많지 않았다. 연관검색어로는 'EU', '유럽연합', '개인정보', '과징금', '기업들' 등 GDPR 내용을 중심으로 이슈화된 것으로 보인다. 뉴스에서도 비롯한 내용으로 연관 검색되었다.

<표 44> GDPR시행 이전 'GDPR' 검색빈도 및 연관어

검색빈도 수	주요 관련 키워드(전체)	주요 관련 키워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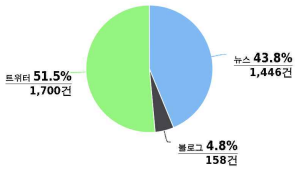		

<표 45> GDPR 시행이전 'GDPR' 연관검색어 경향 분석

긍정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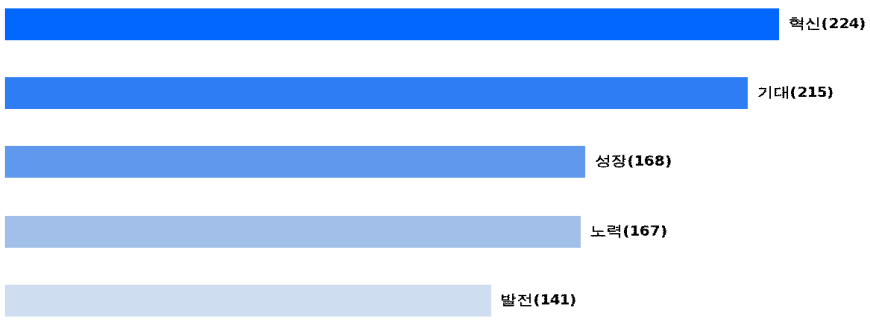
부정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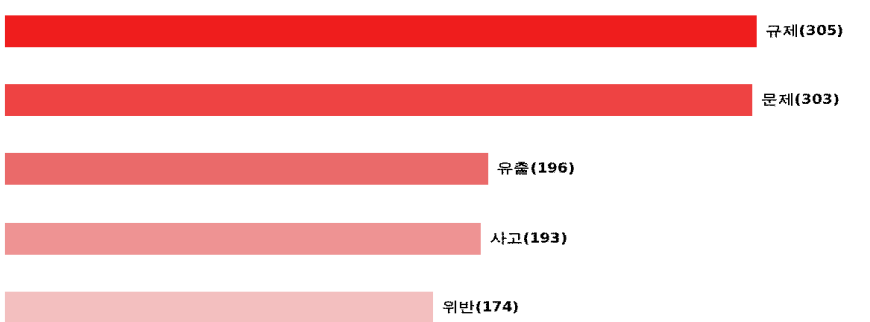

GDPR시행 이후 ‘GDPR’ 검색빈도는 전체 8,557건(뉴스 4,529, 트위터 3,867, 블로거 161)으로 검색되어 시행 이전에 비해 빈도가 증가했으며, 트위터에 비해 뉴스 검색빈도가 많다. 연관 검색어로는 ‘EU’, ‘유럽연합’, ‘개인정보’, ‘과징금’, ‘기업들’ 등 GDPR내용을 중심으로 검색되었으며, 뉴스도 비슷한 단어로 연관 검색되었다.

<표 46> GDPR시행 이후 'GDPR' 검색빈도 및 연관어

검색빈도 수	주요 관련 키워드(전체)	주요 관련 키워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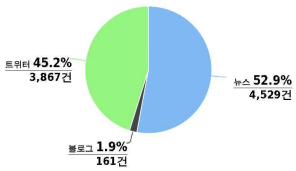		

<표 47> GDPR 시행이후 'GDPR' 연관검색어 경향 분석

긍정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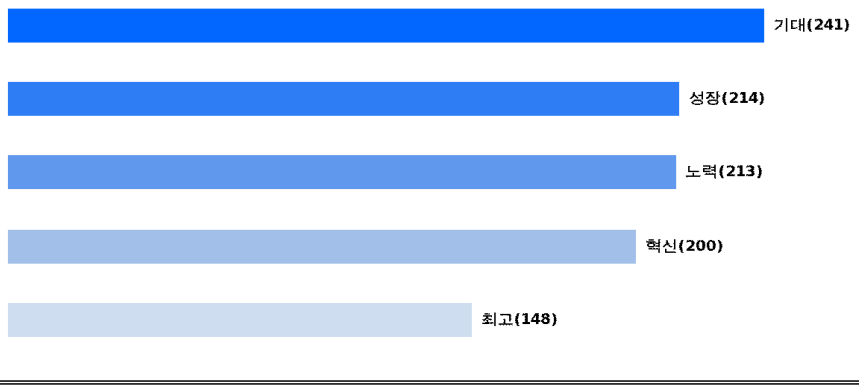
부정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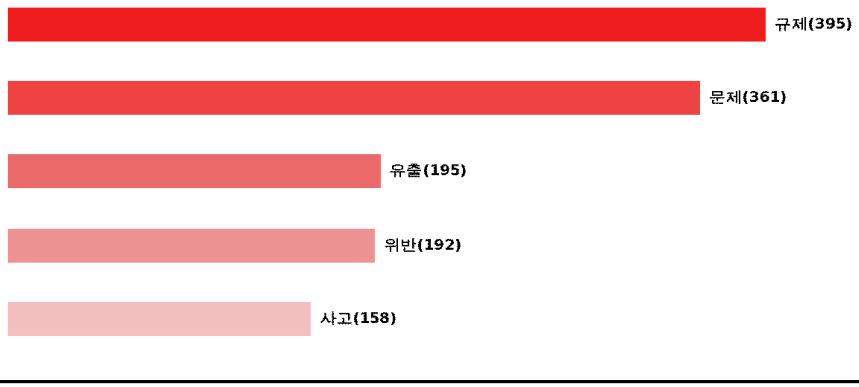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 이전 'GDPR' 단어 검색빈도는 전체 12,042건(트위터 10,806, 뉴스 1,223, 블로거 13)으로 트위터의 관심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뉴스 이슈로 부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연관검색어로는 '개인정보보호법', 'EU', '유럽연합', '개인정보', '과징금', '기업들', 'GDPR 적정성 결정' 등 법 내용이나 대응계획 등을 중심으로 검색되었다.

<표 48> 국내법 개정시행 이전 'GDPR' 검색빈도 및 연관어

검색빈도 수	주요 관련 키워드(전체)	주요 관련 키워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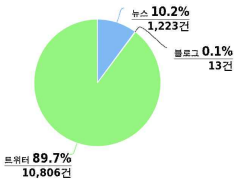		

<표 49> 국내법 개정시행 이전 'GDPR' 연관검색어 경향 분석

긍정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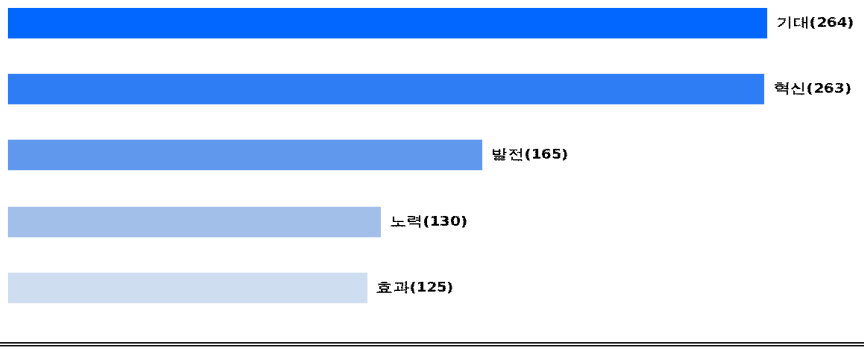
부정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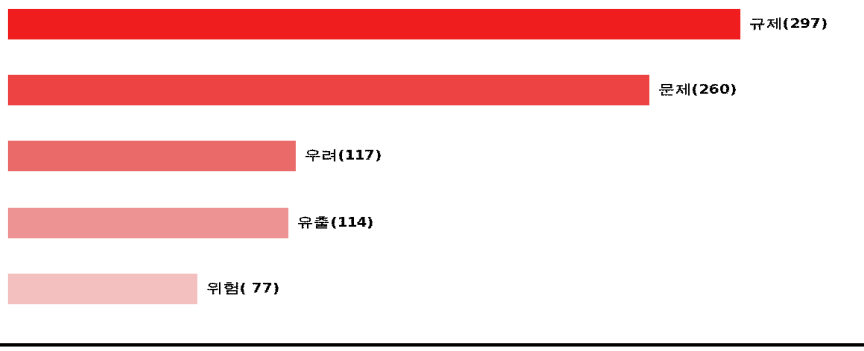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 이후 ‘GDPR’ 단어 검색빈도는 전체 1,428건(뉴스 758, 트위터 653, 블로거 17)으로 법시행 이후 오히려 줄었으며, 전반적으로 관심 수준이 높지 않았다. 연관검색어도 ‘EU’,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적정성 결정’, ‘국제표준 인증’ 등 GDPR에 있는 내용중 ‘적정성 결정’ 등 관심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노출되었다.

<표 50> 국내법 개정시행 이후 'GDPR' 검색빈도 및 연관어

검색빈도 수	주요 관련 키워드(전체)	주요 관련 키워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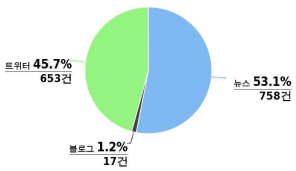		

<표 51> 국내법 개정시행 이후 'GDPR' 연관검색어 경향 분석

긍정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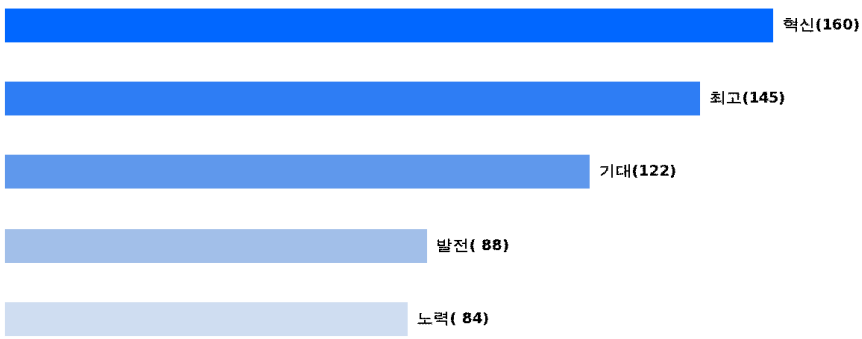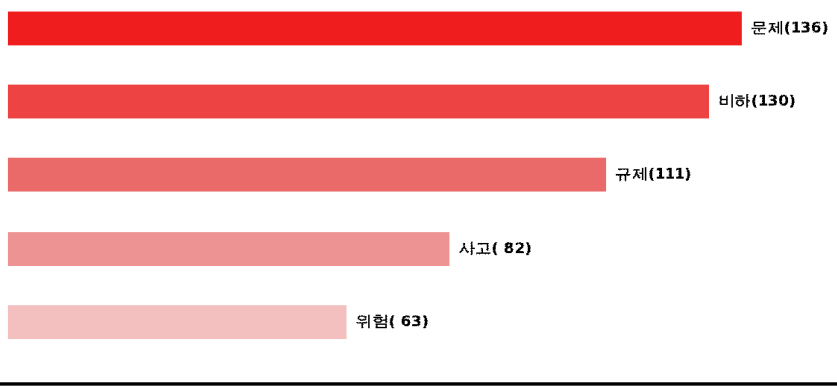
부정키워드